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김명아

지역법제 연구 14-16-②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김 명 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ourism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Kim, Myoung-Ah

2014. 9. 8.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2013년 4월 25일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중국은 「여유법」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여유법」의 제정은 국내 관광산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관광업 관련 실무계에서는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여유법」과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업의 대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과 우리나라 관광업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II. 주요 내용

- 중국의 여행 관련 법규로는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 및 「여행사 조례 실시세칙(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공민 출

국 여유 관리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등이 있으며, 「여유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음.

-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유법」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행사를 포함한 관광사업자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동법에서는 정부가 관광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로서 관광 안전, 가격 관리, 시장 감독과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여행사 내지 쇼핑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최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지고 단체관광상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광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위축이 우려한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3년 12월 16일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를 통하여 사전서면계약을 통해 저가단체관광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 줌.
- 「여유법」시행을 계기로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국 관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 및 여행사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단순 쇼핑 위주의 저가단체관광상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품질을 제고하고, 한국 재방문 관광객 비율을 높여야 함.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중 양국의 정부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가야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행업과 관광업 발전을 위한 법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아직 한국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중국의 여행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와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여행업 규제와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발전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제어 : 관광산업, 중국 「여유법」, 사전서면계약, 저가단체관광상품, 관광상품의 다양화, 정부간 협력체계

---

---

## Abstract

---

---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China enacted “Tourism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on the April 25, 2013 and the Act has been in force since 1 October of the same year.
- China is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rying to standardize the order of tourism marke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ourism Law(旅游法)”.
- The Chinese tourists occupy the first place among foreign tourists in 2014. So, enactment of “Tourism Law(旅游法)” gives a certain impact on domestic tourism of Korea.
- The tourism-related agencies need detailed analysis and study of travel-related legislations in China, but the studies on them are in a shortage.
-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Korea and the strategy to attract Chinese tourists also be devised by performing legal research on travel-related legislations in China.

## II. Main Contents

- Travel-related laws in China are as follows: 「Regulation on Travel Agencies(旅行社条例)」, 「The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f travel agencies(旅行社条例实施细则)」,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Chinese Citizens Going Abroad on Tours at Own Expenses(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and especially 「Tourism Law(旅游法)」 has been in force since October 1, 2013
- As the expectations of quality and service of Chinese tourists increased, the “Tourism Law(旅游法)” introduced strict regulatory action for the business conduct of the agency, including tour operators, emphasizing on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ourists.
- In addition, the Act has emphasized the role of government as a supervisor responsible for providing public services such as safety management, cost control, and market monitoring.
- Due to the enforcement of Tourism Law, it is expected that structural changes occur in tourism, because small-scale agencies and their cheapest package tour program depending on the agency' fees from shopping are starting to disappear, causing the price-rising of group tours commodity.

- However,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fearing the possibility of the shrinking market of Group Tours made a room for the reopening of low tour commodity through prior written contract based on “noti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ourism Law Article 35 on strict law enforcement,” on December 16, 2013.
- The policy response by the Korean concerned authorities to the subsequent changes in travel-related legislations in China, is required to improve quality of Korean Tourism market and ensure fair trade practices among inter-agencies with enhancement of image of the Korean Tourism.
- Various package tour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ourism instead of a simple and cheap shopping-oriented sightseeing, and it will contribute to increase the ratio of tourists visit Korea again.
-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further enhanced and a variety of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also should be supported.

### **III. Expectation**

- It is expected to get some implications needed to activate Korean Tourism by the introduction of new Chinese travel-

related legislations and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wo nation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travel industry in Korea.

- Also, this study will give a chance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egislations related to the Chinese travel industry regulation and presen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Korea and could be a basis of the impending FTA negotiations between two nations, especially services sector.

➤ **Key Words :** Travel Industry, Tourism Law, Tourism Law Article 35, prior written contract, cheapest package tour program, the variety of tour program, Cooperation System of tourism Administ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제 2 장 중국 여행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
제 1 절 중국 여행업 및 관광객출입국관리 현황 .....	19
제 2 절 우리나라 관광산업과의 관계 .....	21
제 3 장 중국 여행 관련 법제의 구성과 특징 .....	27
제 1 절 관련 법제의 변천 .....	27
제 2 절 관련 법제의 입법 경과 .....	28
제 3 절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31
1. 여행사 조례 .....	31
2.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46
3. 중국국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 .....	60
4. 관광가이드 관리조례 .....	68
제 4 장 중국 「여유법」의 입법배경과 특징 .....	75
제 1 절 「여유법」의 입법 배경 .....	75

제 2 절 「여유법」의 구성과 내용 .....	77
1. 구 성 .....	77
2. 내 용 .....	78
3. 여행사의 영업행위 .....	82
4. 여행계약과 여행 안전 .....	86
5. 분쟁해결과 법적 책임 .....	89
제 3 절 「여유법」의 특징 .....	91
1.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	91
2. 저가단체관광의 불합리성 개선 .....	93
3. 알 권리의 보호 .....	96
제 4 절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의 내용 .....	97
제 5 장 비교 및 시사점 .....	101
제 1 절 우리나라 관련 법제와의 비교 .....	101
1. 관련 법제의 연혁과 구조 .....	101
2. 법제의 구성과 내용 .....	102
3. 관광객 권익 보호에 관한 관련 법제 .....	103
4. 양국 법제의 비교 .....	111
제 2 절 시사점 .....	112
1. 관광 상품 개발 다양화 .....	112
2. 단체관광의 품질 향상 필요성 .....	114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	115
4.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	117

제 6 장 결 론 ..... 119

참 고 문 헌 ..... 12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중 FTA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서비스 산업분야의 개방 범위와 수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위주로 한 한국의 관광서비스 시장은 중국의 관광 정책과 법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의 한-중 양국의 관광정책과 시장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외국관광객 수는 약 809만명이며, 그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국민의 해외관광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 관광객을 위주로 한 한국의 관광시장은 많은 성장과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3년 4월 25일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유법」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사업자 쌍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핵심을 두고 여행사를 포함한 관광사업자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정부가 관광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로서 관광 안전, 가격 관리, 시장 감독과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여행사 내지 쇼핑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최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지고 단체관광상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광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관광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한

국 관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과 여행사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중국의 여행 관련 법규는 「여유법」 외에도 여유법 시행 이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 및 「여행사 조례 실시세칙(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국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등이 있다. 또한, 중국 내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관광에서 출입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중국출입국 관리법」도 2013년 큰 폭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 관련 법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방안 위주의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해당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행업과 관광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법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중국의 여행관련 법제에 관하여 소개하고, 여유법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관광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여행업 규제와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광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 관광서비스 분야 협상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과 법제 및 한중FTA 서비스분야 중 관광업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비교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하며, 주요 분석 대상은 중국의 관광 및 여행 관련 법제 연구로 한다. 다만, 관광 및 여행 관련 법제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여유(旅

游)”라는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과 여행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유”라는 용어의 해석과 번역에 있어서는 각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용어사용 방법의 일치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고유 법률명인 「여유법(旅游法)」은 그대로 “여유법”으로, 관광 또는 여행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업, 관광객, 관광지, 여행사, 여행계약 등 상황에 따라 문맥과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1장에서 서론을, 제2장에서 중국 여행업 현황과 우리나라 관광산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국 여행 관련 법제의 구성과 특징을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여유법」의 주요 내용과 동법 제정이 우리나라 관광업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어 제6장 결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여행사와 관광업 및 관광객출입국 관련 법제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시하도록 한다.

즉, 중국의 여행 관련 법규인 「여유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는 외에도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 및 「여행사 조례 실시세칙(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등의 관련 법규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법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법제 전문가를 워크숍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중간

Review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비교법제연구의 성과를 담보하였다. 워크숍 개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구의 방법은 법령분석과 실태조사,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워크숍 개최 내용>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발표주제	발표자
한·중 관광법제 비교와 시사점	윤성혜(원광대학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중국 여유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	김정진(동아대학교 강사)
한·중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 및 대응방안	장은정(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강사)
토론주제	토론자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 및 국내법제 동향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최근 중국 관광업 동향과 인천 중국 관광객 현황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시 관광현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장정재(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여유법 시행에 따른 제주관광 영향 및 대응전략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 여유법 시행의 중국인 방한관광에 대한 영향	최경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중국 여유법 관련 정책 추진현황	하용국(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 제 2 장 중국 여행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제 1 절 중국 여행업 및 관광객출입국관리 현황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최대무역상대국이 된 바 있다. 한·중FTA 협상과정에서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력과 시장개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광서비스업 분야도 그 일부라고 할 것이다.

중국 전체 경제성장 속도에 힘입어 국민 개개인의 소득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 중국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관광산업 차원에서 보더라도 중국 국내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해외여행 수요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즉,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전 중국에 2만 3,269개의 여행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2)</sup> 2013년 중국 관광연구원(中国旅游研究院)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국민의 해외관광 지출도 12,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

1) 다만, 관광수요의 증가와 여행사의 폭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그 영업과정에서 덤핑관광 등 불공정·불합리한 국내·외 여행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생겨나는 폐단도 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관광산업과 여행업에 대한 일정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25일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신동일·정지형, ‘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No.167, 제주발전연구원, 2013. 9. 30, 2면.

[ 표 1 ] 중국의 2013년 관광산업 현황<sup>3)</sup>

구 분	금 액	동기대비	관광객 수	동기대비	적 자
2013년 관광 총 수입	2.7억 위안		34억 명		720억 달러
국내관광 수입	2.6억 위안	14% 증가	33억 명	11.6% 증가	
입국관광 수입	480억 달러	4% 감소	1.29억 명	3% 감소	
출국관광 소비	12,000억 달러	20% 증가	9,800만 명	18% 증가	

이에 중국 정부는 국내외 여행자와 관광객의 국내여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이며, 2013년부터 「여유법(旅游法)」과 「국민여행 및 여가 요강(国民旅游休闲纲要)」 및 각종 반부패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sup>4)</sup>

즉, 국민 여행 및 여가 요강(国民旅游休闲纲要)에서는 2020년까지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고 봄과 가을여행, 수학여행 등을 장려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국민의 여행과 여가 보장, 여행과 여가의 환경개선, 여행과 여가의 인프라 건설, 관광상품 개발 강화, 여행과 여가의 공공서비스 개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6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래 강력한 부패척결 정책<sup>5)</sup>이 시행되고

3) 中国旅游研究院(2014),『中国旅游经济蓝皮书:2013年旅游经济运行分析与2014年发展预测』; 인천발전연구원 한중Zine 최신중국동향 vol.125에서 재인용.

4) 김수한, ‘중국 관광법제 토론문’,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170~171면.

5) 8대 규정(八项规定)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조사연구의 개선, 회의의 간소화, 문건의 간소화, 출장 출국의 규범화, 경찰활동의 개선, 뉴스보도의 개선, 엄격한 문건의 발표, 근검절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6대 금지규정(六项禁令)에서는 공금을 사용한 상호방문·선물·잔치, 상급기

있는데 이는 공무원출장의 기간단축과 공금사용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 공무원의 국내외 공무원여행과 관련 종사자의 비즈니스 여행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sup>6)</sup>

## 제 2 절 우리나라 관광산업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관광시장 개방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1998년에 일부 지역에 대하여 한국에게 관광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한국 관광시장 개방은 2000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2013년 8월 기준 방한 중국인관광객 수는 약 809만 명 정도였으며, 이는 전체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36.4%로서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8.6%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sup>8)</sup> 그 중에서 중국, 일본, 미국의 외국인관광객 수가 가장 많으며, 2013년부터는 중국의 관광객 수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외국인관광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에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법 시행 전의 감소 우려와는 다르게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1,518,938명으로, 전년의 동기대비 34.9%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의 관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 표 2 ]와 [ 표 3 ]은 2013년 10월부터 2월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동향을 정리한 표이다.<sup>9)</sup>

---

관에 대한 지역특산품 제공, 사례금·유가증권·지급증권·선불카드 등의 선물 수수, 허례허식, 표준금액을 초과한 접대, 도박 등을 모두 금지하였다(<http://tr.gzcom.gov.cn/dp-00000000000000010480.shtml>).

6) 김수한, 앞의 글, 172면.

7) 최경은, ‘중국 여유법 주요 이슈 분석 및 방한관광에 미치는 영향 전’, 『KCTI Insight 제22호(2013-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9. 27, 3면.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 여유법 제정에 따른 중국인 방한 관광에 미치는 영향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도자료』, 2013. 9. 30, 1면.

9) 최경은, ‘중국 여유법 시행의 중국인 방한관광에 대한 영향’, 『중국의 여행 관련

[ 표 2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단위 : 명, %)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	성장률								
2010	181,428	30.6	136,152	33.1	119,061	17.4	91,252	-1.9	140,571	9.8
2011	214,681	18.3	174,164	27.9	159,080	33.6	113,927	24.8	157,019	11.7
2012	279,440	30.2	204,533	17.4	195,997	23.2	167,022	46.6	173,790	1.7
2013	343,273	22.8	276,428	35.2	276,234	40.9	196,371	17.6	249,698	43.7
2014	-	-	-	-	-	-	296,708	51.1	326,295	30.7

\* 성장률 : 전년 동월대비 성장률

[ 표 3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순수관광 목적)

(단위 : 명, %)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	성장률	수	성장률	수	성장률	수	성장률	수	성장률
2010	107,237	39.8	75,686	50.6	58,987	23.7	40,433	-7.3	60,605	135.9
2011	141,824	32.3	113,856	50.4	101,605	72.2	55,070	36.2	53,863	-11.1
2012	204,866	44.5	155,503	36.6	148,320	46.0	106,606	93.6	74,895	39.0

법제와 관련 현황(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188~189면.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	성장률								
2013	249,850	22.0	208,175	33.9	210,950	42.2	148,118	38.9	169,395	126.2
2014	-	-	-	-	-	-	230,706	55.8	219,533	29.6

\* 성장률 : 전년 동월대비 성장률

중국의 여유법 제정 직후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는 향후 중국인 방한 관광변화 추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sup>10)</sup> 여유법 제정 직후 실제로 중국 여행사의 해외단체관광상품 가격과 전체적인 관광상품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여유법 시행 초기에 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한편 중국 여행사들이 여유법 적용과 규제 정도를 관망하면서 관광객 모객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행사가 제공하는 물품구매코스과 옵션관광 항목에 관하여 중국 여유법 제35조의 금지 규정에 따라 단체관광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자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3년 12월 16일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国家旅游局关于严格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的通知)」<sup>11)</sup>를 발표한 바 있다. 동 통지의 제정 목적은

10) 2013년 4월 25일 제정된 중국 「여유법(旅游法)」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 10월 1일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가장 큰 휴가철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설날(春节, 음력 1월 1일)부터 정월대보름(元宵节, 음력 1월 15일)에 이르는 춘절휴가와 노동절(劳动节, 5월 1일) 및 국경절(国庆节, 10월 1일)을 전후로 일주일 정도를 쉬는 국가지정휴가가 있다. 동법의 시행일을 10월 1일로 정한 것은 5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국경절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1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제4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여유법의 실시 이후, 여유부문(관광 소관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과 기업 간 여유법 제35조<sup>12)</sup>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정도가 다른 문제점이 있어 왔다. 여유법의 정확하고 유효한 실시를 보장하고, ‘마이너스 투어피(零负团费)’ 등 위법적 경영행위의 근절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법적 경영행위 및 편법적 행위는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가 마련된 이후, 오히려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국 여행사가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지발표 내용을 관광객과의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는 쇼핑과 선택관광 항목 판매를 허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다시 단체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여유법 시행 후 쇼핑이 포함된 단체여행 상품판매는 국내 관광업계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통지가 발표된 이후 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중국 여유법 시행전의 낮은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으며, 악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관광업계의 나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고, 특히 ‘마이너스투어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여유법 시행 후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제고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sup>13)</sup>

2013년 중국인의 한국입국자 수는 2012년도에 비하여 119만명(43.6%)이 증가한 3,923,190명으로서,<sup>14)</sup> 중국인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2) 중국 여유법 제35조

여행사는 불합리한 낮은 가격의 관광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쇼핑이나 그외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여행사조직 및 관광객 접대인은 쇼핑장소를 지정할 수 없고 관광프로그램에 추가 비용항목을 추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쌍방 협의에 따라 또는 관광객의 요구가 있을시 기타 다른 관광객들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3) 최경은, ‘중국 여유법 시행의 중국인 방한관광에 대한 영향’, 190~191면.

14) 관광객 입국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하용국, ‘중국 여유법 관련 정책 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환승관광무비자입국정책 실시,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절차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2014년 1~2월(춘절 연휴) 기간 동안 주중공관의 사증발급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단체사증 발급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서, 중국 「여유법」 제정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의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sup>16)</sup> 오히려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관광객의 재입국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관련 산업의 육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7)</sup>

중국관광객의 한국관광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국 현지 모객 여행사와 한국 현지 여행사 간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하여서는 한국과 중국 정부 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FTA 서비스분야 관광업부문 협상 시, 양국 관광업 소관부처나 관련 감독기관 간 업무협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

진현황’,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192~213면을 참고.

15)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 입국자는 10,678,334명으로 이는 2012년에 비해 5.4%(약55만 명)가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392만 명(36.7%), 일본이 약271만 명(25.4%), 미국이 약74만 명(6.9%), 타이완이 약56만 명(5.3%)이었으며, 2012년과 비교하여 중국(약119만 명)과 홍콩(약4만 명)은 증가한 반면, 일본(약78만 명)과 타이완(약4천 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므로 국적별 입국자 및 관광객 증감현황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및 여행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입국목적별로는 관광과 방문이 약886만 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약45만 명(4.3%), 재외동포입국 약28만 명(2.6%) 순서를 보이고 있다. 입국유형별로는 단체관광(약118만 명), 크루즈관광(약49만 명), 제주도무비자관광(약43만 명) 등이었다. 특히 크루즈관광은 2012년에 비하여 116.5%(약26만 명)가 증가하여 향후 크루즈 관광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정비와 법제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하용국, ‘중국 여유법 관련 정책 추진현황’, 192면.

17)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총 4,602,59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약225만 명, 일본 약56만 명, 타이완인 약28만 명, 미국 약20만 명, 홍콩 약15만 명 순이고, 연령별로는 20대 약108만 명, 30대 약98만 명, 40대 약77만 명 순이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연령별, 성별, 입국유형별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제 2 장 중국 여행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써 양국 관광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제 3 장 중국 여행 관련 법제의 구성과 특징

### 제 1 절 관련 법제의 변천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내국인의 국내관광과 해외관광객의 중국 국내 입국 관광을 위주로 한 차별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입국관광을 위주로 하는 관광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내국인의 출국관광에 대하여서도 규범화하여 발전시킨다는 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국인의 출국관광에 대한 규범화에 따라 그에 대한 통제와 제한이 완화되면서 중국 내국인의 출국관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관광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5월 기준으로 중국에는 2만 3,269 개의 여행사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중국의 여행 및 관광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1985년 11월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이 적용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내외국인 출입국관리를 통합한 법률인 「중국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管理法)」이 기본법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법규로서는 2002년 5월 국무원이 마련한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이 있다. 한편, 국무원은 1987년 제정하였던 「가이드관리임시 규정(导游人员管理暂行规定)」을 폐지하고, 1999년 5월 14일 중국 국내

18) 신동일·정지형, 앞의 글, 2면.

여행 관광가이드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국무원이 제정한 「가이드관리조례(导游人员管理条例)」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동 조례의 하위규정으로는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이 2002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가이드관리조례 실시세칙(导游人员管理条例及实施细则)」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급격하게 팽창하는 중국 국내 여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를 2009년 1월 제정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 하위법령으로서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은 같은 해 4월 3일 제정하여 5월 3일부터 「여행사조례 실시세칙(旅行社条例实施细则)」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2013년 4월 25일 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여유법(旅游法)」은 관광 관련 기본법으로서 법의 이념과 목적을 포함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여유법 제정 이전에 마련된 다양한 관련 법제들의 소개를 위주로 하며, 여유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을 바꾸어 제4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제 2 절 관련 법제의 입법 경과

중국이 관광산업을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주요산업으로 판단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다.<sup>19)</sup> 즉, 1979년 1월 덩샤오핑이 관광산업을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창한 이래, 1981년 5월에는 국무원이 베이징에서 ‘전국 여유 업무 회의(全国旅游工作会议)’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19) 1970년대 이전 중국의 여행관련법규로는 1950년 국무원이 공포한 「여행사관리 임시조례(旅游社管理暂行条例)」가 있다. 동 조례는 2009년 「여행사 관리조례(旅游社管理条例)」가 제정되면서 폐기되었다.

20) 동 회의에서는 중국식 관광산업 구축을 위한 중앙공산당 중앙서기처의 지시를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힘입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관광산업도 함께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광 및 여행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국무원은 1985년에 「여행사 관리 임시조례(旅行社管理暂行条例)」를 제정하였다.<sup>21)</sup>

관광산업이 다양한 산업의 종합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유명 자연경관 지역 임시관리조례(风景名胜区管理暂行条例)」, 「여유업 치안 관리방법(旅游业治安管理办法)」, 「여유 기본 건설 임시관리방법(旅游基本建设管理暂行办法)」, 「관광호텔의 합자, 합작 설립 심사비준 절차의 엄격한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严格执行合资、合作建设旅游饭店审批程序的通知)」 등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조화로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sup>22)</sup>

1998년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여행산업을 제1차 국민경제의 새로운 영역으로 보았으며, 개혁개방 20년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은 더욱 발전해갔다. 그러나, 해외관광객 급증함에 따라 환경생태계의 파괴와 유적지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리우 환경과 발전선언(里约环境与发展宣言)」, 「21세기 아젠다(21世纪议程)」, 「생물다양성협약(生物多样性公约)」, 「여행산업에 관한 21세기 아젠다(关于旅游业的21世纪议程)」, 「지속가능한 여행발전헌장(可持续旅游发展宪章)」, 「지속가능한 여행발전 행동계획(可持续旅游发

전달한 바 있다.

21) 동 조례는 중국의 여유법규 구축을 위한 기초법규로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관광시장에서의 관광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규범하였으며, 관광업 주관 부처인 국가여유국은 동 조례를 기초로 하여 여행사, 호텔, 관광가이드, 관광상품 가격, 기업재무관리 등에 대한 하위규정들을 마련하였다.

22) 관광업 발전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제정한 여행 관련 법규는 120여 건에 이르며, 그 중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지방정부 규장은 16건에 이르고,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기관이 마련한 규범성문건도 105건에 이른다(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http://www.cnta.com/>).

展行动计划)』 등의 국제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은 관광산업과 관련 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90년에는 국가여유국이 「여행사의 청산·정리 강화에 관한 의견의 통지(关于进一步清理整顿旅行社意见的通知)」, 「여행안전 임시 관리 방법(旅游安全管理暂行办法)」, 「국외에 설립한 관광사업자에 관한 임시 관리방법(关于在国外设立旅游经营机构的暂行管理办法)」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1년에는 국무원이 “国发[1991] 8号” 정책성 문건<sup>23)</sup>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여유국은 이에 따라 「여행업 관리 강화를 위한 약간 문제에 관한 고시(关于加强旅游行业管理若干问题的请示)」<sup>24)</sup>를 마련한 바 있다.<sup>25)</sup> 지방의 관련 규정으로는 1995년 하이난성 제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통과한 「하이난성 여행관리 조례(海南省旅游管理条例)」가 있으며, 동 조례는 지방경제 발전의 중요한 산업으로 기능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sup>26)</sup> 이후 지방 여유법제 입법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sup>27)</sup>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관광법제의 국제화도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1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관광업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进一步加快旅游业发展的通知)」를 마련하여 관광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sup>28)</sup>

2002년의 「중국국민 출국여유 관리 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은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를 행정적으로 관리

---

23)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에서는 정책성문건(政策性文件)을 채택할 수 있어, 이러한 정책성문건은 법률과 기타 하위법규의 제·개정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관련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서는 중국 입법법(立法法)에 규정된 기본적인 법규 형태의 관련된 법제 이외에도 정책성문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4)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52819](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52819)

25) 王立纲·卢印东, 『旅游法律知识问答』, 北京: 旅游教育出版社, 1998.

26) [http://www.hainanpc.net/eap/446.news.detail?news\\_id=37022](http://www.hainanpc.net/eap/446.news.detail?news_id=37022)

27) 魏小安, 『新编旅游经济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28)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1/content\\_60814.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01/content_60814.htm)

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법제화로 전환하는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29)</sup>

### 제 3 절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중국에서 관광객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규로는 관광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sup>30)</sup> 관광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법규로는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 또는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导游人员管理条例), 중국국민 출국여유 관리 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등이 있다.<sup>31)</sup>

#### 1. 여행사 조례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는 국무원령 제550호로 2009년 1월 21일 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무원의 행정법규이다.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관광산업의 시장질서 유지,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행사 조례는 중국 본토 내에 설립되어 경영활동을 하는 모든 여행사에 적용되는 법규이다.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여행사 설립, 제3장 외국인 투자 여행사, 제4장 여행사 경영, 제5장 감독과 검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4장과 제6장에서 여행사의 경영과 규

29) 장은정, ‘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78~80면.

30) 다만, 소비자권익보호법과 하위규정들은 관광객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소비자 전체에 해당하는 법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31) 韩玉灵, 『旅游法教程』, 北京: 旅游教育出版社, 2007; 韩玉灵·武冰欣, “促进旅游业健康发展的重要保障—写在「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出台之际”, 『理论研究』, 2013. 6, 43면.

정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사의接客행위와 관광가이드 운영에 대한 행위규정을 정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적용순서 측면에서 본다면, 여행사 조례는 여유법 하위규정으로서 여행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행사 조례는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 관련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관광객 또는 관광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수호하며 관광산업을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여행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여행사라 함은 관광객의 모집과 조직 및接客행위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관광사업 및 인바운드관광과 아웃바운드관광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칭한다.

제 3 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기관은 전국의 여행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광관리부서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여행사의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 물가, 상무, 외환 등의 관련 부서는 법에 근거한 직무에 따른 업무 분담을 통해 여행사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여행사의 경영에 관하여 자율과 평등, 공평,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 5 조 여행사의 조직은 정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화와 자율성을 발양하여 여행사의 합법적인 운영과 공정경쟁 및 성실경영을 지도하도록 한다.

## 제 2 장 여행사의 설립

제 6 조 국내 관광업무와 인바운드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의 설립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
2. 필요한 운영설비
3. 30만원 이상의 등록자본

제 7 조 국내관광업무와 인바운드 관광업을 수행하는 여행사의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위탁지역의 시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청을 한다. 아울러 본 조례 제 6조 에 부합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접수 후 수리일로부터 20 영업일 내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허가의 경우 신청인에게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설립등기한다. 불허의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여행사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나고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아웃바운드 관광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나 위탁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한날로부터 20 영업일 내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허가의 경우 신청인에게 여행사업무

영업허가증을 교환발급하고 여행사는 교환 발급받은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기 한다. 불허의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여행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 부분을 지사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사 소재지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등록을 한다. 여행사의 지사설립에 지역적 제한은 없으며 지사의 영업범위는 지사의 여행사업무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여행사는 전문적인 관광객 모집과 여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여행사 홈페이지라 칭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기 수속을 신청하고 소재지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등록을 한다.

여행사홈페이지는 여행사의 통일된 관리를 받고 관광객 모집과 여행정보제공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제12조 여행사의 명칭, 영업장소, 법정대리인 등의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종결되었을 때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수속완료일을 기준으로 10 영업일 내에 허가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등록 하고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을 교환수령하거나 반환한다.

제13조 여행사는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하는 은행에 품질보증금 통장을 개설하여 품질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허가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법적으로 취득한 담보금을 제공한다. 이 때 담보금은 품질보증금의 은행담보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국내관광업무와 인바운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는 품질보증금 20만 위안을 납입하고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담당하는 여행사는 품질보증금 120만 위안을 납입해야 한다. 품질보증금의 이율은 여행사에 귀속된다.

제14조 여행사는 국내여행이나 인바운드 업무에 관한 지사를 설립할 경우 각 지사별로 품질보증금 5만 위안을 납입한다.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품질보증금은 지사별로 각 30만 위안이다.

제15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

1.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위반하고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이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경우
2. 여행사의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원인으로 관광객이 예납한 여행비용에 손실을 입힌 경우

제16조 인민법원의 판결과 결정 및 기타 유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행사가 배상을 거절하거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여행사의 품질보증금 통장에서 금액을 이체하여 배상한다.

제17조 여행사가 품질보증금을 납부 또는 보충한 날로부터 3년 내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보관된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을 50% 감액하고 이를 공고한다. 여행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증거를 통해 품질보증금을 감액 받는다.

제18조 여행사는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관광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품질보증금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법적으로 품질보증금이 감액된 후,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이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였을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품질보증금 보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 품질보증금을 보충해야 한다.

제19조 여행사가 여행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은행에서 품질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제20조 품질보증금의 발급, 사용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 및 관련기관이 별도로 제정한다.

### 제 3 장 외국인 투자 여행사

제21조 외국인투자여행사는 본장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본장 규정에 없는 경우 본 조례 기타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전항의 외국인 투자여행사라 함은 중외합자영업여행사, 중외합작영업여행사와 외자여행사를 포함한다.

제22조 외국인 투자 여행사의 설립에 관하여 투자자는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에 신청을 하고 본조 제 6조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는 신청수리일로부터 30 영업일 내 심사를 마치도록 한다.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여행사허가심사결정의견서를 발급한다.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여행사의 설립 신청인은 외국인투자여행사 허가심사결정의견서, 정관, 합자, 합작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를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불비준을 결정한다. 비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에서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수취하도록 통지한다. 신청인은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과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기를 한다. 불비준의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여행사는 중국 내 주민들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관광업무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다. 단 국무원의 결정 또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나 내륙과 홍콩, 마카오 등의 긴밀한 경제무역과 관련된 예외 규정에서는 인정 된다.

### 제 4 장 여행사의 경영

제24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해 진실만을 전달하여 허위광고를 할 수 없다.

제25조 아웃바운드관광업에 종사하는 여행사는 관광행정주관부서에서 공포한 중국국민 아웃바운드 관광 목적지 외의 국가와 지역에 관광객이 출국하여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없다.

제26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관광 프로그램의 배정 및 소개 시 관련 법률이나 법규 규정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제27조 여행사는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관광객의 동의가 있기 전에 여행사는 여행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기타 유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객과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여행사의 명칭과 영업범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여행사업 무영업허가증 번호
2. 여행사 업무담당자의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3. 계약체결지 및 체결일자
4. 관광일정의 출발지와 경유지 및 목적지
5. 관광일정중의 교통, 숙박, 음식 서비스 등의 배치 및 기준
6. 여행사에서 동일적으로 계획된 관람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
7. 관광객의 자유활동시간과 횟수
8. 관광객이 지불해야 할 관광 비용 및 지불방법
9. 여행사가 계획한 쇼핑횟수, 정류시간 및 쇼핑지의 명칭
10.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관람항목 및 가격
11.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조건과 사전통지기간
12.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해결제도 및 책임
13. 관광서비스의 감독, 신고전화
14. 쌍방 협의에 관한 기타 내용

제29조 여행사는 관광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할 시 여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해야 한다.

여행사와 관광객이 체결한 여행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 조

건의 이해에 관하여 논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상식에 의해 해석하도록 한다. 형식적 조건에 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시 관광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형식적 조건과 비형식적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 비형식적 조건을 사용한다.

제30조 여행사는 중국 내륙의 주민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을 조직할 경우 단체관광의 전 일정을 동행할 인솔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31조 여행사는 관광객의 접객을 위한 가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인솔자를 위임할 경우 반드시 국가공인된 가이드증이나 인솔자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32조 여행사가 가이드나 인솔자를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제33조 여행사와 위임된 가이드 및 인솔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여행계약 상 약정의무의 불이행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여행계약의 변경이 아닌 경우
3. 사기나 강박을 통해 관광객에게 물건을 강매하게 하거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관광프로그램에 참가를 강요

제34조 여행사는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보전이 되지 않는 관광객을 위한 접객과 서비스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접객과 서비스의 보전 비용이 단체관광의 서비스 원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단체관광의 관련비용을 책임지게 요구할 수 없다.

제35조 여행사는 여행계약에서 약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36조 여행사는 관광업무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가진 여행사에 위탁을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아

올리 수탁여행사는 관광객의 접객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광객 접객에 관한 각종 서비스 계획과 기준을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다.

제37조 여행사는 타 여행사에 관광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여행사의 서비스에 원가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여행사는 단체관광에 대한 접객과 서비스에 관한 비용이 부족하거나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 수탁받을 수 없다.

수탁여행사의 위약행위로 인해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침해가 야기될 경우 위탁여행사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며 위탁여행사는 배상 완료 후 수탁여행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여행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38조 여행사는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사 책임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보험관리감독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9조 관광객의 신변과 재산안전에 관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위험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위험발생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발생했을 시 여행사와 위임받은 가이드 및 인솔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한다. 국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즉시 중화인민공화국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련 외교 기관이나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제40조 관광객이 국외체류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의 위임 인솔자는 즉시 여행사와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대사관 및 영사관 등 관련 외교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에 협조하도록 한다. 여행사는 인바운드관광 시 발생하는 관광객의 중국내 불법체류에 대해 즉시 관광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 또는 외사부서에 신고하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에 협조한다.

## 제 5 장 감독 및 감사

제41조 관광, 공상, 물가, 상무, 외환 등의 주관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여행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관광, 공상, 물가 등의 행정관리부서는 관리감독 조사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 내용은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의 발급, 변경, 취소, 말소 등의 상황과 여행사의 불법영업행위와 기록문건, 관광객의 민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43조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광객은 즉시 관광행정관리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물가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 또는 외환관리부서에 신고하고 신고접수를 받은 부서는 책임권한에 의해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광객에게 통지한다.

제44조 여행사와 지사는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여행계약과 서비스 품질, 여행안전, 재무장부 등의 감독 감사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영업과 재무정보 등의 통계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관광, 공상, 물가, 상무, 외환 등의 관련부서의 담당자는 여행사의 어떠한 금품 및 상품이라도 받을 수 없으며 여행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쇼핑이나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여행사를 통하여 본인 또는 친지, 기타 타인, 단체 등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다.

## 제 6 장 법적 책임

제46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부당이득(違法所得)을 몰수하거나 부당이득이 10만위안 이상인 경우 그 이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당이득이 10만 위안 미만이거나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여행사업무영업허가, 국내여행업의 영업, 인바운드관광업, 아웃바운드관광업 등의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지사의 영업범위가 지사를 설립한 여행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했을 시
3. 여행사홈페이지에서 모집이나 정보제공 외의 업무를 하였을 시

제47조 여행사가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양도, 임대 또는 임차할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몰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 여행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본 조례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품질 보증금을 입금 또는 보충하지 않거나 상응하는 은행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여행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 본 조례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여행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여행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 본 조례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명칭, 영업장소, 법정대리인 등의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 종결의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에 허가 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교환하거나 회수하지 않은 경우
2. 지사 설립 시 규정된 기한 내에 지사 소재지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고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영업과 재무 정보 등의 통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1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여행사가 중국 내 주민들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및 홍콩, 마카오 등의 특별행정구와 타이완지역의 관광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아웃바운드관광 여행사가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기관이 공포한 중국공민의 아웃바운드 관광 목적지국 외의 국가와 지역에 관광객을 조직하여 보내려고 한 경우에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한다. 부당이득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그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당이득이 10만 위안 미만이거나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여행사업무 영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관련 법규와 법률 규정에 위반한 내용의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여행사업무영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3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여행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홍보를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물가 주관부서는 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제54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여행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외에 기타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본 조례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1. 관광객과 여행계약 미체결 시
2. 관광객과 여행계약 체결 시 본 조례 28조의 규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시
3. 관광객의 동의 없이 타 여행사에 관광업무를 위탁했을 시
4.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않은 여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시
5. 수탁여행사와 관광객 접객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56조 본 조례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민들의 아웃바운드 관광을 구성하고 단체관광객에게 전 일정을 동반할 인솔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

제57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는 국가 공인된 가이드 또는 인솔자 자격증 미소지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여행사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8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모집한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5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여행사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이드와 인솔자의 위반행위 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그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과 가이드 및 인솔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여행계약상 약정의무의 불이행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계약 일정의 변경이 아닌 경우

3. 사기나 강박을 통해 관광객에게 물건의 강매 또는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관광프로그램 참가 강요

제60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비용이 보전 되지 않는 관광객에 대한接客과 서비스를 요구하거나接客과 서비스의 보전 비용이 단체관광의 서비스 원가보다 낮은 경우 또는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단체관광의 관련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침해를 야기한 경우 또는 필요한 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본 조례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 명령 및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여행사가 수탁여행사에接客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여행사가 수탁여행사에接客과 서비스 관련 원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
3. 수탁여행사의接客에서 단체관광에 대한接客과 서비스비용이 지불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제63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한 여행사와 위임받은 가이드 또는 인솔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여행사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이드와 인솔자에게는 4천위안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여행사에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 가이드증, 인솔자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발생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여행사가 조직한 아웃바운드 관광에서 관광객이 해외 불법체류를 하는 상황에 여행사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여행사가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중국 내 불법체류에 대해 즉시 신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64조 출입국관리(国(边)境管理)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여행사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여행사가 여행사업 무영업허가를 취소당했을 시 주책임자는 여행사업무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어떤 여행사의 주요 책임자 지위를 맡을 수 없다.

제65조 여행사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시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6조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와 담당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본 조례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핵심인사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간부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

1.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여행사의 관리감독 및 조사상황을 즉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관광객의 신고에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고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객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
4. 여행사에 뇌물을 받은 경우
5. 여행사가 비용을 지불한 쇼핑이나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6. 여행을 통해 본인이나 친지 또는 기타 조직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 제7장 부 칙

제67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타이완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내륙에 여행사를 투자 설립하려 할 때 본 조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제68조 본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6년 10월 15일 국무원이 공포한 “여행사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 2.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旅行社条例实施细则)」은 국가여유국이 「여행사조례」의 구체적인 적용과 감독을 위하여 2009년 4월 2일 제정하고, 같은 해 5월 3일부터 시행한 부문규장이다.

동 실시세칙 제1장 제2조 이하에서는 단체관광 등의 직접적인 관광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정의와 내용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사와 지점의 설립·운영, 영업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광객 및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旅行社条例实施细则)」

#### 제1장 총칙

제1조 “여행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2조의 관광객의 모집과 조직,接客 등의 관련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서비스
2. 숙박서비스
3. 식사서비스
4. 관광 및 관람 휴가와 레저 등의 서비스
5. 가이드, 인솔자 서비스
6. 관광정보와 관광프로그램계획 서비스

여행사는 위탁을 받아 아래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1. 관광객의 위탁을 받아 교통편과 숙박, 출입국, 비자 등의 수속 대리
2. 기관이나 사업부문 또는 사회단체의 위탁을 받아 출장, 시찰, 회의,

- 전람 등의 공무수행에 관한 교통, 숙박, 식사, 회의업무 등의 사무 대리
- 3. 기업의 위탁을 받아 각 종의 상무활동이나 여행 장려 등에 관한 교통, 숙박, 식사, 회의업무, 관광, 휴가와 레저 등의 대리
- 4. 기타 관광서비스
- 5. 전항의 출국, 비자 수속 등의 서비스는 아웃바운드관광영업권을 가진 여행사가 처리한다.

제 3 조 “조례” 제 2조의 국내 관광업무는 여행사의 중국 내 거주민에 대한 중국 국내 관광의 모집과 조직,接客행위를 말한다.

“조례” 제 2조의 인바운드 관광업무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 국내 여행에 대한 모집과 조직,接客행위를 말하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광객의 내륙여행과 타이완 지역 거주민의 내륙여행과 중국 내 외국인과 중국내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및 타이완 지역의 거주민의 중국내 관광에 대한 모집, 조직,接客업무를 포함한다.

“조례” 제 2조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는 중국 내륙 거주민의 해외여행 및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여행에 관한 모집, 조직,接客업무를 말하며 중국내의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타이완 주민의 해외 관광업무에 관한 모집, 조직,接客업무를 포함한다.

제 4 조 여행사와 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감독 부서가 “조례”에 의거하여 본 세칙 규정과 책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고 관할지역을 관리 한다.

제 5 조 여행사의 서비스 품질 등급제 시행을 장려한다. 여행사의 전문화와 네트워킹, 브랜드화를 장려한다.

**제 2 장 여행사의 설립과 변경**

제 6 조 “조례” 제 6조 제 1항 규정의 영업장소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은 영업용 장소에 대한 재산권을 갖출 것 또는 신청자가 영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영업장은 신청인의 업무와 영업의 필요에 부합할 것

제 7 조 “조례” 제 6 조 제 2 항 규정의 영업설비는 아래의 시설을 포함한다.

1. 2회선 이상의 고정된 전화
2. 팩스기, 복사기
3. 관광행정관리부서와 기타 관광사업자가 네트워크 된 컴퓨터

제 8 조 여행사의 설립신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서(성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아래의 문서를 제출한다.

1. 설립신청서. 신청서의 내용은 설립여행사의 영문이름과 약자, 설립지의 주소, 기업형태, 출자자, 출자액, 출자방식, 신청인, 신청접수부처의 명칭, 신청서 명칭과 신청시간 등을 포함한다.

2. 법정대리인의 이력서와 신분증명
3. 기업정관
4. 법에 근거한 자산 확인 기구의 자산 확인증명서 발급
5. 영업장소의 증명
6. 영업시설과 설비의 증명 또는 설명
7.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명칭사전심사통지서”의 발급

성급관광행정관리부서는 지역의 시급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위탁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제 9 조 신청수리를 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인의 영업장소, 영업설비 및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거나 하급관광행정관리부서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관광행정관리주관부서에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허가 및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 이상 여행사 업무경력이 있고 2년 동안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행사의 아웃바운드관광 영업허가의 취득은 국무원관광행정주관부서에서 여행사영업허가증과 교환하여 발급한다. 여행사는 여행사업무영

업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영업범위와 변경내용을 등록한다.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는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에 위탁하여 여행사 아웃바운드관광업무의 수리를 처리하게 하고 성급관광행정관리부서는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행사가 변경(边境)관광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관광임시관리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타이완지역 관광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대륙주민 타이완지역 관광관리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여행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심사발급 받은 여행사 업무영업허가증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과 부분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기관이 통일된 양식을 제정하고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와 성급관광행정관리부서가 별도로 제작한다.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과 부분을 훼손하거나 유실했을 시 여행사는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교환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과 부분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 여행사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 공개 발행되는 간행물을 통하거나 성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의 홈페이지에 훼손, 유실, 폐기 성명(声明)을 게재한다.

제12조 여행사의 명칭, 영업장소, 출자자, 법정대리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등기 처리 후 변경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접수시켜야한다.

여행사의 영업 종결 시 말소수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리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증명한 말소증명서를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외국인 투자 여행사는 “조례” 제 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비준을 받지 않은 여행사의 외국인 투자를 불허한다.

제13조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하는 여행사 품질보증금 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은행은 아래의 내용의 서면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품질보증금 납입에 관한 여행사와 계약이 본 실시세칙 제 15조 규정의 협의에 부합함을 동의해야 한다.
2.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은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품질보증금 이체 후 3영업일 내 이체상황과 액수를 여행사 소재지의 성급관광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발행한 이체문건 또는 인민법원의 효력있는 법률문건의 복사본을 제출해야한다.
3. “조례”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품질보증금액이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보충의무를 진다.

여행사는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은행 범위 내에 품질보증금 납부 은행을 선택한다.

제14조 여행사는 은행에 품질보증금을 납부할 때 단독 통장을 개설하고 기간은 여행사가 확정하나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계좌의 기한 만료 시 여행사는 즉시 연장을 해야 한다.

제15조 여행사는 품질보증금의 예치, 계속 이체, 증액 후 7영업일 내 허가된 관광행정관리부서에 품질보증금의 예치, 계속이체, 증액 등의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와 은행은 품질보증금 사용에 관한 협의를 달성하여야한다.

전항의 협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여행사와 은행 쌍방은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품질보증금 사용에 동의한다.
2. 여행사와 은행 쌍방의 승낙은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증명한 품질보증금의 이체 또는 성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증명한 감액, 품질보증금 환불 문서, 인민법원이 인정한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칙을 침해한 효력있는 법률문건 외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품질 보증금을 유용할 수 없다.

제16조 여행사는 “조례” 제 17조 품질보증금액에의 감액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근거하여 10영업일 내 품질보증금의 감액 문건을 발급해야 한다.

제17조 여행사는 “조례” 제 18조에 근거하여 품질보증금의 보충 후 7영업일 내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충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 제 3 장 여행사의 지사

제18조 여행사의 지사(이하 지사)와 여행사 소매점(服务网点)(이하 소매점)은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지사로 설립되며 소매점(服务网点)을 가진 여행사(이하 본사)의 명칭은 “조례”의 영업활동 규정에 따르고 영업활동의 책임과 결과는 본사가 담당한다.

제19조 본사는 지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지사 설립등기를 처리한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소재지와 공상등기등급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1. 본사의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 부분과 기업법인사업자등록증 부분
2.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3. 지사 책임자의 이력서와 신분증명
4. 품질보증금 이체 증명서

등급의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없으면 한 단계 위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제20조 지사의 영업장소, 영업설비와 시설은 “조례” 제 6조 제 1항과 2항 및 본 실시세칙 제 6조 제 7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사의 명칭은 본사의 명칭과 지사소재지의 지명 포함해야 하고 “지사” 또는 “자회사”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21조 소매점(服务网点)이란 여행사가 관광객 모집을 위해 설립하고 여행사 명의로 관광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직매점 등의 기구이다.

본사는 소매점(服务网点)을 설립할 지역의 범위를 본사 소재지 구역의 시 행정구 계획 내에서 해야 한다.

본사는 전항 규정의 지역범위 밖에서 소매점(服务网点)을 설립할 수 없다.

제22조 소매점(服务网点)은 관광객이 알기 쉽고 출입이 쉬운 공공장소에 설립한다.

소매점(服务网点)의 명칭과 표시는 본사의 이름과 소매점(服务网点) 소재지의 지명을 포함한다. 여행사 또는 지사의 내용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는 약칭을 써서도 안 된다.

소매점(服务网点)은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본사는 소매점(服务网点)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소매점(服务网点) 설립등기 처리를 한 후 3영업일 내 아래의 서류를 소매점(服务网点) 소재지 공상등기동급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접수시켜야 한다.

1. 본사의 여행사업영업허가증부분과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부분
2. 소매점(服务网点)의 사업자등록증
3. 소매점(服务网点) 책임자의 이력서와 신분증명

동급의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없으면 한 단계 위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제24조 지사와 소매점(服务网点)의 서류제출 후 서류를 접수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에 “여행사지사등록등기 증명” 또는 “여행사소매점(服务网点)등록등기증명”을 발급한다.

제25조 지사는 본사와 소매점(服务网点)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사는 지사와 소매점(服务网点)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사에 일관된 인사, 재무, 모집,接客제도 등의 규범화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소매점(服务网点)에도 관리와 재무, 모집, 안내 서비스의 규범화를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 제 4 장 여행사의 영업규범

제26조 여행사와 지사, 소매점(服务网点)은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 “여행사지사등록등기증명” 또는 “여행사소매점(服务网点)등록등기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영업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제27조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의 양도, 임대 또는 임차를 할 수 없다.  
여행사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의 양도, 임대 또는 임차행위에 속한다.

1. 관광객모집과 본 실세세칙 제 34조 제 1항 규정의 관광객 접객 상황 외에 기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암묵적 동의 및 허가를 하고 본인의 명의로 여행사 업무 영업 활동을 하는 것
2. 기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제28조 여행사 지사의 사무소, 대표소 또는 연락소 등의 처리기관은 여행사 업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9조 여행사가 인터넷 여행업무를 할 경우, 관련 법률과 법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외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여행사의 명칭, 법정대리인, 허가번호와 업무영업범위 및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신고 전화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례” 제 26조 규정에 여행사의 금지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이익과 민족존엄에 반하는 행위
2.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별행위
3. 도박, 음란, 마약 관련 행위
4. 기타 법률과 법규정에 위반한 행위

제31조 “조례” 제34조 규정의 여행사가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단체관광의 관련비용을 책임지게 요구할 수 없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비용의 선대
2. 단체관광 접객을 위해 여행사에 비용지불
3. 기타 불합리한 비용

제32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조직하여 교통, 숙박, 음식, 관광지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 합법적인 영업자격과接客 서비스 능력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3조 관광계약 체결 시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배정한 쇼핑활동 또는 관광객에게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참가를 강요할 수 없다. 동일한 단체관광 중에서 여행사는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다른 관광객과 계약 내용을 달리 체결할 수 없다.

1. 관광객이 여행사가 배정한 쇼핑활동이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거절한 경우
2. 관광객의 연령이나 직업에 의한 차별, 단 여행사가 다른 관광객과 비교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이 주동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34조 여행사는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 접객 업무를 위탁할 때 “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 관광목적지의 수탁여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는 관광객접객업무 위탁 시 “조례” 제36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광목적지의 수탁여행사의 명칭, 주소, 연락가능한 자, 연락처 등을 관광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관광일정 개시 전 관광계약의 약정해제 사유 발생 시 관광객의 동의를 구하고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기타 여행사를 추천해주고 관광객은 추천된 여행사와 관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광객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여행사는 관광객을 기타 다른 여행사에게 넘겨 접객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여행사에게 위임을 받은 가이드 및 인솔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관광계약이 안배한 일정을 자의적으로 변형한 행위에 속한다.

1. 관광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관람시간을 줄인 경우
2. 관광프로그램을 추가시키거나 변경한 경우
3. 쇼핑횟수를 늘리거나 쇼핑시간을 늘린 경우
4. 기타 관광계약에서 배정한 행위에 자의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제37조 관광일정 중 불가항력으로 관광객의 신변과 재산안전에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여행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여행사가 부득이 계약에 약정된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해야할 경우, 사전에 관광객에게 이를 설명을 해야 한다.; 객관적 상황에서 사전설명이 불가함이 명확하면 사후에 설명을 해야 한다.

제38조 관광일정 중 관광객은 여행사가 관광계약 외에 쇼핑이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여행사와 위임받은 가이드 및 인솔자는 관광객이 여행사가 배정한 쇼핑 또는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떤 구실이나 이유를 들어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 할 수 없고 계약 이행거절이나 서비스제공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제39조 여행사에게 위임을 받은 가이드 및 인솔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광객의 신변이나 재산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한다.

관광 일정 중의 자유시간에 관광객은 자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며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제40조 자연재해 등 의외의 위험이 관광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행사는 관광객의 모집 및接客 시 관광객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여행사의 합법적인 보험대리 자격 취득을 격려하고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관광객에게 개인상해보험 서비스 가입을 제공한다.

제41조 아웃바운드관광객이 불법체류 또는 인바운드관광객의 국내 불법체류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소재지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나 공간기관 또는 외사부에 신고한다.

제42조 여행일정 중 여행사와 위임받은 가이드, 인솔자는 관광객에게 관광규정이나 예절을 준수할 것을 고지한다.

제43조 여행사와 위임받은 가이드 및 인솔자는 업무 중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관광객에게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와 제때 관련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관광객에게 관광계약에 약정된 관광일정 준수와 개인용품을 잘 보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공사고 및 기타 위험상황 발생, 여행사가 관광계약에 약정된 구제 조치를 위반했을 시 관광객에게 손실확대 방지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 관광계약서에 약정 범위를 넘어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5. 관광객이 관광 목적지의 법률이나 풍속 및 관습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44조 여행사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의 모집과 조직에 관한 각종 계약서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계약서, 관련 문서와 자료의 보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행사는 기타 영업자 또는 개인에게 관광객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보존기간이 초과한 관광객의 개인정보는 폐기처분한다.

## 제 5 장 감독감사

제45조 “조례”와 본 실시세칙 규정에 근거하여 여행사의 신청 또는 서류 등록을 수리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인 또는 여행사에 여행사 설립 신청에 관하여 “조례”규정의 서류 등록 시 제출한 증명문건 및 그 원본을 처리하고 사본을 제공하며 날인확인을 한다.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46조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와 지사의 관리감독을 실시할 경우 영업장소에 가서 모집 조직, 관광객 접객에 관한 각종 계약서와 관련문서 및 자료 재무장부를 열람하고 또한 거래기록과 업무영수

증 등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여행사와 지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와 지사의 감사 시 두 명 이상의 관광행정법집행증을 가진 법집행자를 파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47조 여행사는 연도별로 아래 영업과 재무정보 등의 통계자료를 만들고 다음 해 3월 전에 허가를 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낸다.

1. 여행사의 기본상황, 기업형태, 출자자, 직원 수, 부서설치, 지사, 네트워크 체계 등
2. 여행사의 영업상황, 영업수입과 이유 및 세금 등
3. 여행사의接客 구성 상황, 국내여행, 인바운드 여행, 아웃바운드 여행조직, 및接客인수 등
4. 여행사의 안전, 품질, 신용상황, 여행사의 책임보험가입과 인증 및 상벌 등

전항 자료 중에 여행사의 상업비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관광행정관리부서는 비밀보장 의무가 있다.

제48조 “조례” 제 17조, 제 42조 규정의 각종 공고,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본 부서 또는 상급관광행정관리부서의 정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품질보증금의 납부액의 감소,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의 발급, 변경과 말소,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 또는 성급관광행정관리부서는 허가결정 또는 등록심사 후 20영업일 내 사회에 공개한다.

여행사의 불법 영업 또는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의 말소 등의 행정처벌 결정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처벌 발효 후 10영업일 내 사회에 공개한다.

관광객이 여행사 정보를 신고할 때 관광행정관리부서의 신고처리는 분기별로 사회에 공고한다.

제49조 다음과 같은 상황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하고 관광객은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1. 여행사가 “조례”와 본 실시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여행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광계약에 약정된 서비스 기준이나 등급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여행사의 파산 또는 기타 원인으로 관광객의 선납된 여행경비에 손실을 끼친 경우

여행사의 품질보증금 이체를 결정하고 여행사 또는 지사 소재지의 관광객이 신고한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한다.

제50조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법정권한 내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동급 관광품질감독집행기관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제6장 법적 책임

제51조 본 실시세칙 제 12조 제3항, 제23조, 제26조 규정에 위반하여 자의적인 외국인 투자를 도입하여 소매점(服务网点) 설립에 관해 규정된 기한 내에 서류등록을 하지 않거나 여행사와 지사 소매점(服务网点)이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게시하지 않고 등기증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본 실시세칙 제 22조 제 3항,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매점(服务网点)이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관광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행사의 출장소, 연락소, 대표소 등 여행사업에 종사하는 같은 기관도 이와 같은 경우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제46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3조 본 실시세칙 제 32조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 관광지 등의 업체를 선정할 때 합법적인 영업자격과 서비스능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몰수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이득의 3배 이하로 처리하며 3만원안의 벌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부당이득이 없을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본 실시세칙 제 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배정한 쇼핑참가를 요구하거나 관광객에게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관광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행위 혹은 동일한 단체관광의 관광객에게 다른 관광객과 다른 관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본 실시세칙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목적지의 수탁여행사의 상황을 관광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 제 35조 제 2항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광객을 다른 여행사나 접객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 제 55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7조 본 실시세칙 제 38조 2항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사와 가이드 및 인솔자가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협박이 포함된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조례” 제 59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8조 본 실시세칙 제 44조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 관광계약 관련 자료와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는 현급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며 부당이득의 3배 이하로 처리하나 3만 위안을 넘지 못한다.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 여행사업무영업허가증을 말소시키는 행정처벌은 허가를 준 성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여행사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벌을 받고 정지 기간에는 관광객의 모집이나 관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이미 체결된 관광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7 장 부 칙**

제60조 본 실시세칙은 국무원 관광행정주관부서가 해석책임을 진다.

제61조 본 실시세칙은 2009년 5월 3일자로 시행된다. 2001년 12월 27일 국가여유국이 공포한 “여행사관리조례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3.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

「중국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4号)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은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여권을 소지한 관광객의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감독과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국무원이 2001년 12월 제정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법규이다.<sup>32)</sup>

중국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에서는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해외여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관리방법은 한국방문 중국 관광객 모집과 관광서비스 제공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규정이 된다.

32) 중국의 법률과 하위법규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입법권한이 있는 국가와 지방기관에 따라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정,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등으로 구분된다. 즉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본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본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이 있으며, 국무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행정법규, 국무원의 각 부처 및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부문규장, 성·자치구·직할시 등의 인민정부에서 제정하는 인민정부 규장이 행정입법에 속한다. 그리고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비준하는 지방성 법규와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있다.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는 ‘조례(条例)’라는 명칭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은 국무원령으로 제정·시행되는 행정법규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국법 체계에서 본다면 중국 여권 소지자의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제 1 조 여행사가 중국 공민의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조직을 규범화 하고 아웃바운드 관광객과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아웃바운드관광의 목적국은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제의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국무원관광행정부서가 공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공민이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가 공포한 아웃바운드관광의 목적국외에 국가에 대한 관광을 조직할 수 없다. 중국공민이 국무원 관광행정부서가 공포한 아웃바운드관광지 국가외의 국가에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사유로 임시적인 전문관광을 조직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관광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여행사의 아웃바운드관광 영업의무에 관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제여행사 자격 취득 후 만 1년이 경과할 것
2. 인바운드관광업무에 특출한 업적이 있을 것
3. 영업기간 중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었을 것

제 4 조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를 신청하려는 여행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30영업일 내 본 법 제 3조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심사를 완료한다. 심사 통과 후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비준을 신청한다. 심사에서 탈락했을 시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국무원 관광행정부서는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를 비준한다. 이러한 비준 행위는 여행업의 발전계획과 합리적인 발전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광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아 아웃바운드 관광영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영업이나 비즈니스, 시찰, 훈련 등의 방식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영업을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국무원 관광행정부서는 아웃바운드 관광업무의 영업자격을 취득한 여행사(여행사)의 명단을 공시하고 국무원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 6 조 국무원 관광행정부서는 전년도 전국 인바운드 관광업적, 아웃바운드 관광 목적지의 증가현황과 아웃바운드 관광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매년 2월 말 이전에 본년도 아웃바운드관광객의 수와 총수를 결정하고 성, 자치구, 관광행정부서에 하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각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전년도 인바운드 관광 업적과, 영업능력, 서비스 품질을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매년 3월 말 이전에 각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본년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의 계획을 심사한다.

국무원 관광행정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부서에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연도별 아웃바운드관광인원수의 안배와 국민의 아웃바운드관광 조직의 현황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이를 심사 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중국국민아웃바운드단체관광명단표”(이하 명단표)를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본 년도 아웃바운드관광객수의 안배를 시기에 따라 번호를 매겨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부서에 보내고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부서는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심사 및 발급한다.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배분 심사에 따라 아웃바운드 단체관광을 조직하고 명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관광객과 인솔자가 처음 또는 두 번째 출국할 때 기재해야 하는 명단표에서 심사를 거치면 인원을 추가할 수 없다.

제 8 조 명단표(一式四联). 구분은 다음과 같다. 출국심사전용, 입국심사전용, 관광행정부서 심의 전용, 여행사 자체보관 전용.

아웃바운드여행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 단체관광객의 출입국시, 단체관광의 입국 후 명단표를 구별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는 이를 심사하고 보관 한다.

아웃바운드 관광의 외화환전은 관광객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 관광객은 유효한 보통 여권을 소지하고 직접 아웃바운드 여행사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수속을 할 수 있다. 유효한 일반 여권이 없으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여권신청을 한 후 아웃바운드 관광수속을 한다.

아웃바운드여행사는 관광객에게 목적국의 비자 등의 출국 수속을 처리한다.

제10조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단체관광객에 전문 인솔자를 배치한다.

인솔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부가 주관하는 심사에 합격하고 인솔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인솔자는 인솔업무 수행 시 자격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본 방법과 국무원 관광행정부서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단체관광은 국가가 개방한 개항장소를 통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

단체관광의 출입국 시 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 비자, 명단표의 심사를 받는다. 국무원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단체관광은 관광목적지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 또는 무비자 처리를 한다.

단체관광의 출국 전 단체의 분산 입국이 확정되는 경우 아웃바운드여행사는 사전에 출입국심사본부 또는 성급 공안심사부서에 수속을 한다. 단체관광의 출국 후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한 이유로 분산 입국이 필요할 경우 인솔자는 적시에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통지하고 여행사는 즉시 관련 출입국심사본부 또는 성급 공안심사부서에 수속을 한다.

제12조 여행사는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아웃바운드관광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거짓홍보나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제13조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수행 시 관광객과 서면여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계약에는 여행시작과 종료시간, 노선, 가격, 식사와 숙박, 교통과 위약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여행계약서는 여행사와 관광객이 각각 부씩 보관한다.

제14조 여행사는 관광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관광객의 신변과 재산 안전에 관한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위기상황 발생 시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한 경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

제15조 여행사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조직할시 목적지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신용이 우수한 여행사(이하, ‘수탁 여행사’로 약칭)를 선택한다. 또한 선택한 여행사와 서면계약을 작성한 후에 접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여행사와 단체관광 인솔자는 현지 여행사에 약정한 단체활동 계획에 따른 관광 및 관광객에게 도박, 음란, 마약 등과 관련되거나 위험 행위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자의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관광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없고 강박이나 유사강박행위로 관광객에게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탁 여행사가 위탁여행사와 단체관광 인솔자가 전항 규정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위반할 시 위탁 여행사와 인솔자는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제17조 단체관광의 인솔자는 관광객에게 관광 목적지국의 관련 법률과 풍속이나 관습 및 기타 관련된 주의사항을 소개해야 하며 관광객의 인격과 종교적 신념, 민족의 풍속과 생활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18조 단체관광의 인솔자가 관광객을 동행하여 관람 과정 중에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시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경고를 해야 하며 위탁여행사의 요구에 근거한 유효 조치를 위하여 위험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제19조 단체관광이 해외에서 특수한 어려움에 빠지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인솔자는 즉시 위탁여행사와 소재국의 중국 대사관 및 영

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탁여행사는 즉시 관광행정부서와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제20조 단체관광의 인솔자는 수탁여행사와 가이드, 관광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타 영업자와 공모하여 사기 또는 협박으로 관광객에게 소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수탁여행사, 가이드, 기타 관광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내거나 공제 또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21조 관광객은 관광목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과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단체관광의 인솔자의 통일된 관리를 따라야 한다.

제22조 관광객의 해외 불법체류를 엄격히 금지한다.

관광객이 해외에 불법체류를 할 경우 단체관광의 인솔자는 즉시 위탁여행사와 소재국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보고해야 하며 위탁여행사는 즉시 공안기관과 관광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한다. 관련부서에서 사항처리 시 위탁여행사는 협조의 의무가 있다.

제23조 관광객은 위탁여행사 또는 단체관광의 인솔자가 본 방법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관광행정부서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위탁여행사 또는 수탁여행사의 위약행위로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여행사는 법에 의하여 관광객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제25조 위탁여행사가 아래와 같은 요건일 시 관광행정부서는 아웃바운드 관광 영업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며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아웃바운드관광업무 자격을 취소시킨다.

1. 인바운드관광실적의 하락
2. 여행사 자체 문제로 1년 내에 정상적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3. 아웃바운드관광 서비스의 품질문제로 신고되거나 조사된 경우

4. 외화의 암거래 및 불법적인 외환거래 행위
5. 관광을 명분으로 한 사기행위, 여권 비자 등의 출입국증서 또는 타인 출국증서의 편취
6. 국무원 관광행정부에서 인정한 중국공민 출국여행질서에 영향을 주는 기타행위

제26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본 방법의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영업, 상무 시찰, 훈련 등의 방식으로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를 변경한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불법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며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위탁여행사가 본 방법 제 10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관광객에게 전문적인 인솔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아웃바운드관광업무 자격을 일시 정지시킨다. 수차례 전문 인솔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자격을 취소시킨다.

제28조 위탁여행사가 본 방법 제 12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벌한다.

제29조 위탁여행사 또는 단체관광의 인솔자가 본 방법 14조 제 2항 제 1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변안전에 위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거나 명확한 경고를 하지 않거나 위발발생 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탁여행사의 아웃바운드관광업무 자격을 일시정지시키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체관광 인솔자는 일시 업무정지 및 그 자격을 취소한다;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근거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0조 위탁여행사 또는 단체관광 인솔자가 본 방법 제16조 규정의 위반

하여 수탁여행사에 관광객이 도박, 음란, 마약 등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위험한 일정에 참가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자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관광프로그램을 축소하고 관광객에게 강박 또는 유사강박행위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수탁여행사에 단체관광을 조직하여 취득한 비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아웃바운드관광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한다. 단체관광의 인솔자에게는 가이드 자격의 일시정지를 명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위탁여행사는 아웃바운드업무 자격을 취소하고 인솔자의 가이드자격 또한 취소한다.

제31조 단체관광의 인솔자가 본 방법 제 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여행사, 가이드, 관광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관광사업자와 내통하여 사기와 협박 등의 행위로 관광객으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거나 수탁여행사와 가이드 기타 관광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내거나 공제 또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수수료를 몰수하며 공제 또는 금품 수수한 것은 수수료와 같이 처리하고 공제 또는 수수한 금품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인솔자 자격을 취소한다.

제32조 본 방법 제 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이 해외에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에 단체관광의 인솔자가 즉시 위탁여행사와 목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위탁여행사가 제때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시 관광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단체관광의 인솔자에게 가이드자격을 일시 정지시킨다. 또한 여행사의 아웃바운드관광업무를 일시 정지시킨다.

관광객이 해외 불법체류하여 귀국하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은 여권을 말소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2002년 1월 2일부로 시행된다. 국무원 1997년 3월 17일 비준을 받아 국가 관광국, 공안부는 1997년 7월 1일 공포된 “중국공민자비출국관광관리임시방법”을 동시에 폐지한다.

#### 4. 관광가이드 관리조례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导游人员管理条例)」는 1999년 5월 14일 제정되고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국무원령 제263호).

동 조례의 내용은 관광가이드 자격, 업무집행 상의 직업윤리 규정, 법적책임에 대한 것이다.

동 조례에 따르면, 관광가이드 자격은 국가고시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관광가이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관광객 접객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관광객의 종교를 존중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강제 물품구매행위를 금지하고, 명시 또는 암시적인 팁 요구 행위를 금지한다.

여유법의 규정과 동 조례의 규정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관광가이드 조례가 여유법보다 먼저 제정되긴 했지만 여유법이 법적용 순서상 상위입법이므로 동 조례는 관광가이드의 자격 취득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화된 하위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导游人员管理条例)」

제 1 조 가이드업의 규범화 및 관광객과 가이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가이드라 함은 본 조례에서 규정된 가이드 자격을 취득하고 여행사의 위임을 받아 관광객에게 안내와 해설 등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제 3 조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한다.  
고급중학 과정 또는 중등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체 건강한

자로서 가이드업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언어표현능력을 갖춘 중국국민은 가이드 자격시험에 참가 할 수 있다; 시험합격자는 국무원 관광행정부서 또는 국무원 관광행정부서의 위임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이드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여행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이드 서비스회사에 등기를 한 후에 근로계약서나 등기증명서를 지참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에 가이드 자격증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 언어 능력을 구비한 자는 가이드 자격 취득 전이라도 여행사의 임시 가이드 고용 필요시 여행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임시가이드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 자격증과 임시가이드 자격증의 양식과 규격은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서에서 정한다.

제 5 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감염성 질병을 앓는 자
3. 과실범죄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가이드 자격이 취소된 자

제 6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는 가이드자격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한다. 본 조례 제 5조에 해당하는 상황의 발견 시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한다.

제 7 조 가이드는 본인의 업무 자질 및 직업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며 국가는 가이드 등급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가이드 등급심사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관광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8 조 가이드는 업무 수행 시 가이드 자격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이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격증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가이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에 가이드자격증의 재발급 수속을 신청한다. 임시가이드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최장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9 조 가이드는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여행사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가이드는 사적으로 일을 맡거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도급을 받아 가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 가이드 업무 수행 시 인격을 존중받으며 신변안전에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가이드는 관광객의 인격에 대한 모욕과 직업 도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가이드는 업무 수행 시 국가이익과 민족 존엄의 수호를 자각하고 국가 이익과 민족 존엄에 해를 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제12조 가이드는 업무 수행 시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타인에게 예를 다하고 관광객의 종교적 신앙과 민족풍습 및 생활습관을 존중한다.

가이드는 업무 수행 시 관광객에게 관광지의 인문, 자연현황을 설명하고 그 지역의 풍토와 관습을 소개해야 한다. 단 관광객의 개인적인 저속한 취향에 맞추거나 관광해설에 저속하고 상스러운 내용을 담아서서는 안 된다.

제13조 가이드는 반드시 여행사가 정한接客 규정에 따라야 하고 관광객의 여행, 자의적으로 참관활동 계획을 가감하거나 관광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가이드 업무 중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가이드가 관광객의 관광 및 관람 과정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수 관광객의 동의를 구한 후, 이후의 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즉시 여행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이드가 관광객의 관광 및 관람 과정에서 관광객의 신변 및 재산 안전에 위급상황이 닥칠 것을 안 경우,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여행사의 요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가이드는 업무 수행 시 관광객에게 물건을 팔거나 관광객의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팁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가이드가 업무 수행 시 사기 또는 협박을 통해 관광객에게 구입을 요구하거나 사업자와 짜고 사기 또는 협박으로 관광객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 관광객은 가이드의 본 조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광행정부서에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무자격 가이드가 가이드업에 종사할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며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시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제19조 가이드가 여행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사적으로 일을 맡거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도급을 받아 가이드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불법소득이 있을시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광행정부서는 가이드 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0조 가이드의 업무 수행 시 국가이익과 민족존엄에 해를 끼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는 가이드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또한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게 경고를 주고 영업정지에 명령을 내린다.

제21조 가이드 업무 수행 시 가이드 자격증 미소지에 관하여는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가이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가이드 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일시 정지한다.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는 가이드 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1. 자의로 관광프로그램을 가감한 경우
2. 자의로接客일정을 변경한 경우
3. 자의로 가이드 업무를 중지한 경우

제23조 가이드가 업무 수행 시에 관광객에게 물건을 팔거나 관광객의 물건을 사는 행위, 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는 가이드 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게 경고를 주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제24조 가이드 업무 수행 시 사기 또는 협박을 통해 관광객에게 소비하게 요구하거나 사업자와 짜고 사기 또는 협박으로 관광객으로 하여금 소비하게 한 경우 관광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시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행정부서는 가이드 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가이드를 위임한 여행사에 대해 경고를 주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또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5조 관광행정부 담당자는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제26조 관광지의 가이드 관리방법에 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7년 11월 4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87년 12월 1일 국가 관광국이 공포한 “가이드관리 임시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 제 4 장 중국 「여유법」의 입법배경과 특징

### 제 1 절 「여유법」의 입법 배경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여행이나 관광에 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였다. 제3장 제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행 관련 법제의 변천 내용을 보더라도 가이드관리 관련 규정에서 시작하여 점차 여행사 관련 규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규정들만으로는 증가하는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광객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sup>33)</sup>

2009년 11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에에서 통과된 「관광업 발전 가속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旅游业的意见(国发〔2009〕41号))」에서는 관광업이 전략산업임을 밝히고 있으며, 관광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34)</sup> 특히 그 주요 정책 이행사항으로 꼽고 있는 10가지 중에서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꼽고 있으며,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요강(旅游服务质量提升纲要)」의 전면적인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2.5 계획(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이하, 12.5 계획이라 함)」에서도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관광수요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신뢰성 있는 관광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의 송

33) 윤성혜, ‘한·중 관광법제 비교와 시사점’,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27면.

34) [http://www.cnta.gov.cn/html/2009-12/2009-12-3-18-48-76377\\_2.html](http://www.cnta.gov.cn/html/2009-12/2009-12-3-18-48-76377_2.html)

퇴이(宋瑞)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를 꼽고 있다. 즉, 1) 관광시장이 규범화되어 있지 못하여 관광객들의 관광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점, 2) 관광 관리감독 정부부처의 조정적 기능과 법규에 기반한 정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기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3) 관광산업의 구조가 초기 발전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 여행사들의 대기업화나 서비스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35)</sup>

2013년 10월의 「여유법」 시행 이전에는 숙박업<sup>36)</sup>과 여행사, 관광소비자 권익보호,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 등에 대하여서는 각각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의 하위규정들을 제정함으로써 각각의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통일적인 기본법의 부재는 관광업 발전의 저해와 관광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여 오게 되었다.<sup>37)</sup>

이러한 중국의 국내적 배경에서 관광업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2013년 「여유법」의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

35) 宋瑞, ‘产业发展视角下的《旅游法》’, 『价格理论与实践』, 第8期 总第350期, 中国价格协会, 2013, 34~35면.

36) 숙박업의 경우, 『관광호텔 합자·합작건설 심사비준 절차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关于严格执行合资、合作建设旅游饭店审批程序的通知)』, 『관광 기초건설 관리 임시방법(旅游基本建设管理暂行办法)』, 『관광숙박업 치안 관리방법(旅馆业治安管理办法)』은 관광숙박업에 적용되는 직접적인 규정이나, 기본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관련 정부부처의 하위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법적 규범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각 사안별 규정 체계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유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7) 乔力·李茂民·高连营. ‘大旅游概念与21世纪旅游业的发展’, 『山东社会科学』, 山东省社会科学界联合会, 2000.5, 40~43면.

## 제 2 절 「여유법」의 구성과 내용

### 1. 구 성

중국 「여유법(旅游法)」은 총 10장 1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국가의 의무와 관광업 발전 원칙 내지 국가의 관광업 발전 지도 방침과 관광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관광업 관련 기구들의 자율적인 감독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제2장 관광객에서는 관광객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계층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 관광객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 관광발전계획 및 육성에서는 국가의 관광발전을 위한 상세한 의무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관광 사업에서는 여행사의 설립과 영업에 관한 다양한 진입규정과 행위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제5장 관광서비스 계약에서는 여행사의 관광객과의 계약 체결 의무와 설명 의무 등 여행사의 다양한 의무를 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관광안전에서는 정부와 관광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및 제도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7장 관광 감독 및 관리에서는 협급이상 지방정부 및 관광 주무부처의 감독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8장 관광 분쟁처리에서는 관광 관련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내용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두고 있으며, 제9장 법적 책임에서는 여행사 및 가이드, 인솔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2. 내 용

### (1) 관광객의 권리보호 규정

관광사업자인 여행사와 관광객 사이에 체결되는 여행계약은 종합적, 혼합적 법률행위에 관한 복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여행목적의 단순하게 여행목적지까지의 이동에 한정되는 계약이라면 여객운송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나, 관광의 경우 숙박과 관광, 여객운송, 가이드고용 등을 포함하게 된다.

하나의 관광상품에 대하여서도 차량 제공, 호텔 숙박, 식사, 가이드고용 등에 대하여 각각 민상법상의 운송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고용계약, 위탁계약 등이 복합적·혼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관광객은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상대 계약당사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와 여행계약이라는 종합적 성격의 계약 한 건만을 체결하기 때문에, 여행사와 관광객 사이에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게 되고,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중국 여유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러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관광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저가단체여행<sup>38)</sup>은 관광객이 여행사와 체결하는 가장 흔한 여

---

38) 저가단체여행을 ‘저가단체관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서 여행업이 주요한 경제산업인 태국에서 여행상품의 수요 공급관계에서 기형적으로 발생 변화한 것이라고 한다. 동남아국가 여행상품에서 적용되던 저가단체관광이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원가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관광객이 관광지에서의 강제적 선택관광 내지 쇼핑, 지역중계여행사와의 리베이트 수납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런 여행상품을 ‘옵션여행상품’, ‘저가여행상품’이라고도 부른다(김정진, ‘중국 여유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86면). 중국에는 이러한 여행상품을 ‘零负团费’라고 하며, 개혁개방이후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로 1995년경부터 여행산업의 대중여행시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李倩倩, “解读《旅游法》” 저

행계약 방식인데, 이러한 저가상품은 기존에 선택관광이나 쇼핑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면이 있어왔다. 이러한 저가단체관광 방식의 상품구성은 여행사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이어져 관광상품의 고품질·다양화를 저해하고, 관광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관광사업자의 수익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여유법 규정을 통하여 관광객이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여행사의 강제성있는 선택관광 상품구성이나 쇼핑장소 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1항). 여유법 제35조의 여행사 금지행위 규정 외에도 동 조항에 따라 관광상품 구성에 대한 관광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게 되었다.

## (2) 관광객의 의무규정

중국 여유법 규정에 따르면, 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광객은 권리 뿐 아니라 의무를 함께 지게 되며, 이러한 관광객의 의무에는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중도덕 준수,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활동의 방해 금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외국관광지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에 낙서를 함으로써 중국관광객의 문화의식에 대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sup>39)</sup> 중국 정부는 관광객들의 잘못된 여행행태를 법률로 규제하기 위하여 여유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고지의무를 두고 있는데, 관광객이 건강정보나 신분정보를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사에 고지하지 않아 여행 중 다른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즉, 관광객이 특

---

旅行社‘零负团费’的制约”, 『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 第33卷 第12期, 2013. 12, 88면).  
 39) 연합뉴스, ‘중국정부 해외관광객 “매너개선”에 신경’, 2013.10.4. 인터넷 기사 참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0/04/0603000000AKR20131004149600009.HTML>)

정 질병을 앓고 있어 다른 관광객과 격리가 필요한 경우 내지 관광객이 범법 경력 등으로 특정 관광지나 일정한 지역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관광객이 자신의 건강정보 또는 신분정보를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여행사와 다른 관광객은 물론 관광자원과 현지주민에게도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 시 관광객이 여행 도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한다.<sup>40)</sup> 그밖에도 관광객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는 여행 중 안전 경고규정 준수 의무(제15조 제1항), 국가의 한시적 여행제한 조치에 대한 협조 의무(제15조 제2항, 제3항), 해외관광객 불법 체류 금지 등의 의무(제16조)가 있다.

이밖에도 여유법 제13조에서는 관광객도 관광활동 시에 사회의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역의 풍습 및 관습을 따르고 전통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태환경 등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선진적 관광행위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중국이 여유법 제정을 통하여 관광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관광행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균형감있게 규정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 (3) 여행계약체결 상의 권리보호

여행계약 체결 시, 관광객과 여행사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등한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행계

---

40) 그리고 관광객은 개인의 종교나 특정지역 출입에 관한 신체적 제한에 대하여도 여행계약을 체결 시 통지 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종교를 믿어 여행지에서 특정음식을 먹지 못하여 단체관광객에 제공되는 단체급식이 제한됨으로써 다른 관광객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 등 개인적 특성으로 특정장소에 입장하지 못하여 다른 관광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이다.

약은 앞의 설명과 같이 종합적, 혼합적 성격을 가진 계약이다. 즉, 각각의 단일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개별 계약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여행사와 관광객 사이에는 ‘여행계약’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광객은 일반적으로 여행사보다는 여행일정,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에 있어 비대칭적인 지위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여행 도중에도 여행사와 같은 정도의 대등한 정보를 가지지는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객은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여행 이후에도 장기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관광객 측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여행상품에 대하여 상품내용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관광객은 당연히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의 저가단체여행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객은 여행상품 구매 시 상품내용과 서비스를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현지 관광지에서 강제구매, 의무구매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제9조). 이것은 「여유법」제정시에 관광객의 권리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여행이미지 개선과 건전한 여행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규정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정 종교나 민족적 풍습을 이유로 여행사가 관광객과의 여행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제10조), 이는 중국이 다민족사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잘 나타내준다 하겠다.

### 3. 여행사의 영업행위

#### (1) 여행사 설립과 영업의 범위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 모집, 여행단 조직,接客 등의 영업행위를 위하여는 여행주관부서의 허가를 취득하고 관계 법률<sup>41)</sup>에 따라登記하여야 한다(여유법 제28조). 여행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1) 고정적인 사업장, 2) 필요한 영업시설, 3) 규정에 따른 등록자본, 4) 필요한 영업관리인과 여행가이드, 5) 법률·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건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여행사조례」는 제2장에서 이러한 여행사의 설립과 영업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행사조례가 여유법 제정보다 앞서 제정되었지만, 여유법 규정에서 여행사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행사조례는 여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행사의 진입과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행사는 「여유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 국내여행, 2) 출국여행(해외여행), 3) 국경지역 여행, 4) 입국여행, 5) 그 밖의 여행업무의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출국여행(해외여행)과 국경지역 여행은 이와 관련한 영업허가증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국무원이 마련한 여행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sup>42)</sup>

---

41) 《여행사조례》 제2장(여행사의 설립) 제6조 규정에 따르면, “국내 여행업무와 입경 여행업무경영을 위한 여행사 설립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고정된 영업장소, (2)필수적인 영업시설, (3)최소 30만 위안의 등록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2) 여행사 조례 제19조

출국여행 업무의 신청은 국무원의 여행행정주관부서나 그가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의 근무일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여행사영업허가증을 교체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교체하여 발급받은 여행사의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변경수속을

## (2) 여행사의 품질보증금 납부

설립된 여행사는 「여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서비스 품질보증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품질보증금은 관광객의 권익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광객을 위협한 상황에서 구조하는 경우의 긴급구조비용에 사용된다.<sup>43)</sup> 여행사는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3일 내에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은행에 품질보증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품질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허가받은 관광행정관리부서에 품질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액을 은행담보로 제공하여 한다(여행사조례 제13조 1항). 품질보증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여행 업무와 입국여행 업무에 대하여는 20만 위안을, 출국여행(해외여행) 업무에 대하여는 120만 위안으로 정하고 있다(여행사 조례 제13조 2항).

여행사는 국내여행업무와 입국여행업무를 위한 지사 1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그 품질보증금구좌에 5만 위안씩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출국여행업무를 위한 지사 1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그 품질보증금구좌에 30만 위안씩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여행사조례 제14조).

국가여유국이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여행사가 여행계약서의 약정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관광행정관리부서가 조사하여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 2) 여행사의 해산, 파산, 기타 원인으로 관광객의 선불한 관광비용이 손실을 입은

---

하여야 한다.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3) 그러나, 여행사의 여행품질보증금 납부가 「여유법」의 입법취지와 「여행사조례」의 입법목적인 건전한 여행업의 발전 및 육성, 합리적인 여행사의 관리감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여행사가 지출하는 품질보증금은 그 성격이 담보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액은 여행사에게 귀속되고, 만일 여행사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품질보증금이 반환된다. 또한, 품질보증금의 납부에 따른 경비지출을 여행영업을 통하여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행상품 내에 포함될 것이며, 이는 결국 관광객이 품질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진, 앞의 글, 90면).

경우이다(여행사조례 제15조). 여행사는 관광행정관리부서가 품질보증금을 사용하여 관광객의 손실을 배상하였거나 법에 따라 품질보증금을 감소한 후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침해로 인해 행정기관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관광행정관리부서의 품질보증금 보완통지서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품질보증금을 전액 보완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품질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추가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 없으면,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을 50% 감액하고 이를 공고한다. 여행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증서를 통하여 그 품질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여행사조례 제17조)고 규정하여 여행사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동일한 취지에서 관광행정관리부서가 품질보증금을 사용하여 관광객의 손실을 배상하였거나 법에 따라 품질보증금을 감액한 이후에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침해로 인한 행정기관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관광행정관리부서의 품질보증금 보충통지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품질보증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3) 여행사의 모객 및接客

여행사가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를 얻고 설립등기 절차를 마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여행사의 영업범위는 관광객의 모객, 상품 구성,接客, 서비스 제공행위 등이 된다.

먼저, 여행사의 모객, 상품구성에 관하여 여유법 제32조는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객·구성할 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허위 광고로 관광객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sup>44)45)</sup>

44) 여행사조례 제29조

여행사는 관광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할 시 여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해야 한다.

여행사와 관광객이 체결한 여행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 조건의 이해에

「여유법」 제34조에서는 여행사가 관광상품을 구성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여행 공급업체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유법」 제35조에 따라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에 비합리적인 저가로 여행활동을 조직하여 관광객을 속여서는 안 되며, 쇼핑 또는 별도요금의 여행항목을 통하여 수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유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여행사는 관광객을 모객·접객 시에 구체적 쇼핑장소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의 선택항목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광객과 여행사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관광객이 요청하여, 다른 관광객의 여행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 항목의 추가가 가능하다.

접객행위에 있어서도 여유법에서는 여행사가 단체해외여행을 조직하거나 단체입국여행을 조직·접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인솔자 또는 가이드를 배치하여 전체 여행일정에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유법 제36조).<sup>46)47)</sup> 이 때, 여행사는 관광가이드와 인솔자와 합법적인

---

관하여 논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상식에 의해 해석하도록 한다. 형식적 조건에 관해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시 관광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형식적 조건과 비형식적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 비형식적 조건을 사용한다.

45) 「여행사조례」 제24조에서는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즉, 여행사가 특정의 여행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집할 경우, 관광상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광객이 관광상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관광상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모객·상품 구성을 할 때, 허위광고 내지 과대광고를 하여 관광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여행사조례 제53조).

46) 여행사조례 제33조

여행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광가이드 또는 인솔자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여행계약 상 약정의무의 불이행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여행계약의 변경이 아닌 경우
3. 사기나 강박을 통해 관광객에게 물건을 강매하게 하거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관광일정 참가를 강요

47) 여행사조례 제34조

여행사는 관광가이드와 인솔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없는 접객 및 서비스를 요구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현지의 최저임금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여행사조례 제32조).

#### 4. 여행계약과 여행 안전

##### (1) 여행계약 체결과 관광객의 고지의무

대부분의 관광객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단체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사용대차, 고용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나의 여행계약으로 단일화하여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계약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sup>48)</sup>

이러한 여행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행사가 우선 여행일정을 구성하고 프로그램화하여 관광객을 모집하는 방법(기획여행상품 또는 패키지여행상품)을 사용한다. 이 경우 여행사는 여유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1) 여행사와 관광객의 기본 정보, 2) 여행 일정, 3) 그룹투어의 최소인원수, 4) 교통, 숙박, 식사 및 여행서비스의 준비 및 기준, 5) 관광, 오락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6) 자유시간 배정, 7) 여행경비 및 지불 기한과 방법, 8) 위약책임과 분쟁해결 방법, 9) 법률 규정과 쌍방이 약정한 기타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의 내용을 여행계약 체결 관광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내용에는 여행사가 기획여행상품에 따른 일정에 있어接客대행여행사에의 위탁사항, 여행가이드의 서비스 내용 등도 포함된다(여유법 제60조).

또한, 「여유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1) 관광객이 여행일정에 참가하기 부적합한 경우, 2) 여행일정 중 안전주의사

---

수 없고,接客과 서비스에 대한 보전 비용이 단체관광의 서비스 원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이드와 인솔자에게 단체관광의 관련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48) 김정진, 앞의 글, 92면.

항, 3) 여행사가 법에 의해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 4) 여행목적지에서 관광객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관련 법률·법규, 풍습·종교적 금기, 중국 국내법에 따라 참가가 금지된 활동, 5) 법률·법규에 따라 그 밖에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계약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학회나 기업체 등 특정의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 조직한 여행 일정을 여행사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재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sup>49)</sup> 이러한 특정 단체관광이나 단체여행 계약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위주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하여서는 여유법 제58조 이하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의 범위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획형 특정목적 상품을 개발하고 그에 관한 관광객 권리보호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관광객의 수요를 맞추어갈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이러한 단체상품 다양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관광시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여행계약의 취소와 해지

「여유법」 제63조 규정에 따르면,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여 여행단을 조직하였으나 약정한 인원수 미달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국내여행은 최소 7일 전에 계약관광객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외여행은 최소 30일 전에 계약한 관광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약정한 인원수 미달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여행사는 관광객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른 여행사에

49) 김정진, 앞의 글, 92~93면.

50) 예를 들어, 체험학습이나 지역축제 등에 참가할 학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는 단체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해외 축제 등에 참가할 관광객의 모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다양한 선택관광상품을 가격대별로 구성하여 사전에 해당 관광객의 기호와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연한 상품구성이 필요하다.

위탁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획여행사는 관광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위탁받은 여행사는 기획여행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광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약정 인원수 미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획여행사는 관광객에게 모든 수취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여유법」 제65조는 여행일정이 모두 끝나기 전에 관광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획여행사는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관광객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1) 관광객에게 전염병 등의 질병에 있는 경우, 2)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관련부처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법,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여 활동하는 경우, 4) 다른 관광객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고, 활동중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제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상황 등이다(여유법 제66조).

### (3) 여행안전

단체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자가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보다도 사고예측가능성과 여행일정 등에 대한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 규모나 손해의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sup>51)</sup>

중국 「여유법」 제6장에서는 여행안전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여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여행안전에 관한 종합적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 대응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여행지의 안전위험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제77조).

---

51) 김정진, 앞의 글, 94면.

또한, 정부응급관리체계에 관광 응급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제78조 1항). 돌발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현지 인민정부와 관할 부서 또는 기관에게는 적절한 구조조치 시행의무를 부과하고, 관광객을 출발지 또는 지정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78조 2항).

또한 여행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안전생산관리, 소방안전관리의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기준·업계기준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고, 상응하는 안전생산요건을 갖추어 관광객의 안전보호제도와 긴급상황 대응·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79조).

그리고, 여행사업자는 관광객을 위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응급구조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안전점검·검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위험상황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제79조 제2항). 돌발사건 또는 여행안전사고 발생 후, 여행사업자는 즉시 필요한 구조와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며 관광객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1조). 여행자는 신체·재산·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할 정부 및 관련기관에게 즉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82조).

## 5. 분쟁해결과 법적 책임

### (1) 분쟁해결

여유법 제8장에서는 여행 중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합관광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야 하고, 민원을 접수한 수리기관은 적시에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

할부서로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91조).

여유법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 쌍방합의, 2) 소비자협회나 관광민원처리기관 또는 관할 조정기관에 협조 요청, 3) 관광사업자와의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신청, 4) 인민법원에 소 제기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제92조). 소비자협회와 관광민원신고 처리기구 및 관련 조정 기관은 양당사자의 동의하에 관광객과 관광사업자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인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제93조). 관광객과 관광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관광객의 다수가 공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발하여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제94조).

## (2) 법적 책임

중국의 「여유법」 제9장 법적책임에서는 여행사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허가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의 책임(제95조 제1항)과 허가여행사의 허가증 대여에 대한 책임(제95조 제2항), 2) 단체여행의 경우에 여행인솔자, 여행가이드의 미배치와 인솔자, 여행가이드의 자격미달 등(제96조), 3) 관광객 모집 시에 허위정보제공, 과대광고에 대한 책임, 4) 저가단체관광의 경우에는 각종 수수료 요구에 대한 책임, 5) 여행계약 체결시 관광객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 6) 관광지의 조건에 맞지 않은接客행위와 수용범위 초과, 7) 관광지에서 임의로 입장료를 올리거나 별도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 법적책임에서는 대부분 여행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광객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제13조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관광객이 국내·외에서 여행 중 관광지 유물이나 유적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여유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지지 않고, 현지의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을 질 뿐이다.

### 제 3 절 「여유법」의 특징

#### 1.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2013년 4월 25일에 제정된 중국의 여유법은 그 동안 적용대상별로 다양하게 산재하였던 여행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의 법체계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기본법률 또는 기타법률 등의 ‘법률’은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나 해당 주관부처에서 제정하는 ‘부문규장’보다 상위규범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여행업에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대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동법 제1조에 “관광객과 여행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여행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여행사업이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이하에서는 여유법 입법취지에 적합한 내용의 적용범위(제2조), 여행주체의 보호(제3조), 관광객체에 대한 합리적 이용과 보호 및 개발(제4조), 관광업장려(제5조), 관광업 진흥을 위한 시장법규의 제정(제6조), 지방인민정부의 관광산업 관리감독(제8조) 등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관광산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여유법 제정 이전에는 여행 관련 법규를 행정법규와 지방법규, 행정성문건 등 다양한 입법형식을 통하여 제정하여 왔으나,<sup>52)</sup> 여유법 제정은 모든 관광산업의 질서를 규범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 권익보호강화 및 관광객의 의식향상, 여행사 및 여행가이드에게 합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여행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하여서도 규율함으로써 여행 관련 하위규정들에 대한 기본규범의 기능을 가진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여행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행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조조 제2항에서는,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관광자원이 풍부한 구(區)가 있는 시(市)와 현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의해 여행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구역 간에 종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일여행발전계획을 상급 인민정부가 조직·수립하거나 혹은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조·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이용종합계획, 도농계획수립 시에 관광산업에 대한 시설의 공간배치와 건설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운송·통신·용수공급·전기공급·환경보호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업 발전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여유법 제20조). 또한,

---

52) 기존의 여행관련 법제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사건의 발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규정의 적용만을 받아왔다. 즉, 여행사와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여행사, 문화재보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문화재, 출입국관리에 관하여서는 관광객이라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서만 적용되었다.

국가는 관광이미지의 보급과 확립을 위하여 보급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무원 여행주관부서는 전면적 국가관광이미지의 해외 보급업무를 계획하고, 관광이미지 홍보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여유법 제25조 제1항).

이와 같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여유법 제정을 통하여 중국 정부는 향후 서비스산업과 문화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아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2. 저가단체관광의 불합리성 개선

여유법의 제정 목적은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경쟁 유도로 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발전과 육성에 있다. 그동안 저가단체관광으로 여행상품가격의 불공정한 책정이 보편화되어 왔는데, 여유법은 이러한 여행사의 강제 구매행위와 관광지 입장료의 임의적인 증액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저가단체관광을 방지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저가단체관광은 관광업을 국가의 주요한 경제산업으로 의존하는 태국에서 관광상품의 공급·수요의 기형적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53)</sup> 이는 관광객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주게 되었고, 이는 여행업 이미지의 실추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마이너스투어피(零负团费)’에 의한 저가단체관광을 여행·관광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53) 李倩倩, 앞 논문, 88면 참고.



상기 [그림 2]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여행계약은 관광객이 지불한 여행비용을 기초로 여행사, 접객여행사, 여행가이드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통하여 운영된다. 하지만 이른바 ‘저가단체관광’ 또는 ‘마이너스투어피(零负团费)’의 운영원리는 [그림 1]와 같이, 여행사가 일반적인 여행상품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산출하여 모객행위를 하며, 여행사의 이윤은 접객여행사 혹은 여행가이드에게 소개비를 받거나 관광객에게 특정 상점에서 구매를 강요하고 그 상점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이윤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저가단체관광’의 방식은 여행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상품이 단순화·획일화 되어서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파악하고 있다.<sup>56)</sup>

이러한 여유법의 ‘저가단체관광’ 규제로 여행사가 조직한 여행상품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못함으로써 여행사 경영상에 있어 손실이 예측되었으며,<sup>57)</sup> 실제로 일정기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여행상품이 정상가격으로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는 기존의 덤핑가격에 비하여 체감하는 금액이 비싸게 느껴지고 이로 인하여 관광객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国家旅游局关于严格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的通知)」의 발표 이후 또 다시 이전과 같은 저가단체관광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향후 우리나라의 방한 중국관광객 정책과 관련 관광산업의 육성은 다양한 맞춤형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등 여행사의 서비스 강화와 여행상품 이미지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58)</sup>

56) 李倩倩, 앞의 논문, 88면.

57) 张丙英, “《旅游法》对旅行社与游客的影响分析”, 《科技信息》 2014年 第04期, 243면 참고; 叶海玲, 앞의 논문, 14면 참고; 张百菊·王兴华, “浅谈旅游法实施对旅游业界的影响”, 『才智』 2013年 第34期, 227면; 张圆媛, “浅析新《旅游法》出台后对旅行社经营的影响”, 『旅游管理研究』 2014年2月下半月刊, 16면 참고.

58) 김정진, 앞의 글, 102~103면.

### 3. 알 권리의 보호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 일체의 여행에 필요한 사항 즉 이동, 관광, 숙박, 구매, 오락 등을 예약할 수 있다는 점에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여행사는 관광객에 비하여 여행일정별로 현지 정보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여행사에 전적으로 위탁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은 여행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저가단체관광으로 관광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여행사의 강제쇼핑 또는 여행가이드의 과도한 팁 요구로 추가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러한 여행방식은 관광객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상당부분 불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여유법에서는 ‘관광객의 권리보호’라는 중요한 원칙을 여러 곳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은 관광객이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에 상품내용에 관한 정보인 여행일정, 여행지의 상황, 여행지의 입장료, 여행가이드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알권리를 말한다.

한편 여행계약체결에 있어서 관광객의 정보제공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는 물론, 계약 해제와 해지로 인한 여행비 회수 방법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여유법 제68조에는 “여행일정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여행사는 여행자가 출발지 또는 여행자가 지정한 합리적인 장소로 귀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여행사 또는 이해보조인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귀환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신설은 여행계약의 내용으로서 여행사가 관광객을 여행지로부터 출발에서 귀환까지 책임지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인신과 재산보호 강화 규정으로 볼 수 있다.<sup>59)</sup> 그리고 여행일정 중 관광객의 쇼핑에 관하여도 관

---

59) 김정진, 앞의 글, 103~104면.

광객의 동의 없이 특정장소나 특정상품을 강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여유법의 시행으로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행상품에 대한 비용은 상승하지만, 여행의 전체비용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광객 권리보호에 관한 여유법의 규정은 여행만족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up>60)</sup>

### 제 4 절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의 내용

여행사가 기획하는 쇼핑과 옵션관광 항목에 관련된 중국 여유법의 금지 규정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위축이 우려되자 2013년 12월 16일 중국 여유국은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国家旅游局关于严格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的通知)」<sup>61)</sup>

60) 李倩倩, 앞의 논문, 89면; 孔令学, “浅谈《旅游法》对旅游者安全的全方位保护机制”, 『旅游学刊』第28卷 2013年 第8期, 29면 이하 참고; 米一, “旅游法:剑指行业痼疾”, 『法治与社会』2013年 10期, 38~39면.

61) 「国家旅游局关于严格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的通知」(旅发[2013]362号) 各省、自治区、直辖市旅游局(委) :

旅游法实施以来,旅游部门和企业对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不同程度地存在着理解和执行不一致等问题。为了保证旅游法的正确、有效实施,坚定不移地取缔“零负团费”等违法经营行为,现就严格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通知如下:

一、关于指定具体购物场所和安排另行付费旅游项目

旅行社在旅游活动中指定具体购物场所和安排另行付费旅游项目的,应当按照诚实信用、自愿平等、协商一致的原则,与旅游者订立书面合同,且不得以不合理的低价组织旅游活动,不得诱骗旅游者,不得通过指定具体购物场所和安排另行付费旅游项目获取回扣等不正当利益,也不得影响其他不参加相关活动的旅游者的行程安排。

旅游者不同意参加旅行社指定的具体购物场所或者另行付费旅游项目活动的,旅行社及其从业人员不得因此拒绝订立旅游合同,也不得提高旅游团费或者另行收取费用。

二、关于“以不合理的低价组织旅游活动”

旅行社以低于接待和服务费用的价格或者行业公认的合理价格提供旅游服务,且无正当理由和充分证据证明的,应认定为“以不合理的低价组织旅游活动”。

를 발표하였다. 동 통지의 제정 목적은 ‘여유법의 실시 이후, 여유부문(관광소관부처 및 관계행정기관)과 기업 간 여유법 제35조<sup>62)</sup>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정도가 다른 문제점이 있어 왔다. 여유법의 정확하고 유효한 실시를 보장하고, ‘마이너스투어피’(零负团费)’ 등 위법적 경영행위의 근절을 위한’ 것으로서,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  
(国家旅游局关于严格执行旅游法第三十五条有关规定的通知)

각 성·자치구·직할시 여유국(위원회) :

여유법 시행 후, 관광 주관부처와 기업이 여유법 제35조 유관 규정 집행에 있어서,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집행 방법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

三、关于“诱骗旅游者”

旅行社或者其从业人员通过虚假宣传，隐瞒旅游行程、具体购物场所及商品或者另行付费旅游项目等真实情况的手段，诱使旅游者参加旅游活动或者购买相关产品和服务的，应认定为“诱骗旅游者”。

四、关于“回扣等不正当利益”

旅行社或者其从业人员违反反不正当竞争的有关规定，或者通过诱骗、强迫、变相强迫旅游者消费，收受的旅游经营者以回扣、佣金、人头费或者奖励费等各种名义给予的财物或者其他利益，应认定为“回扣等不正当利益”。

五、关于“影响其他旅游者行程安排”

旅行社安排旅游者在指定具体购物场所或者另行付费旅游项目活动时，没有对其他不参加相关活动的旅游者作出合理的行程安排，导致其合法权益受到损害的，应认定为“影响其他旅游者行程安排”。

请各级旅游主管部门严格按照旅游法有关规定和本通知，加大执法力度，保障旅游者合法权益，确保旅游企业公平、有序、合法竞争，规范旅游市场秩序。

2013年12月16日

62) 중국 여유법 제35조

여행사는 불합리한 낮은 가격의 관광상품을 팔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쇼핑이나 그 외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여행사조직 및 관광객 접대인은 쇼핑장소를 지정할 수 없고 관광프로그램에 추가 비용항목을 추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쌍방 협의하 또는 관광객의 요구가 있을시 기타 다른 관광객들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가 존재해왔다. 여유법의 정확하고 유효한 시행을 보증하고, ‘마이너스 투어피’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 여유법 제35조 유관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구체적인 쇼핑장소 지정과 별도의 선택관광 항목 구성

(1) 여행사는 관광 일정에서 구체적인 쇼핑장소 지정과 별도의 선택관광 항목을 지정할 때 신의성실원칙, 자율적이고 평등한 의사결정 원칙, 협의를 통한 동의 원칙에 따라 여행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불합리한 저가관광을 조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관광객을 기만하거나 구체적인 쇼핑장소 지정과 별도의 선택관광 항목을 구성하여 소개료 수취 등의 부당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관광객의 일정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도 아니된다.

(2) 관광객이 여행사가 지정한 구체적인 쇼핑장소나 별도의 선택관광 항목 구성에 참가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사와 그 종사자는 그로인한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체여행경비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불합리한 저가관광 활동

여행사가 픽업 및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또는 업계에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불합리한 저가관광 활동”으로 본다.

3. 관광객 기만

여행사 또는 그 종사자가 허위광고를 통하여 여행 일정과 구체적인 쇼핑장소 내지 상품 또는 선택관광 항목 등의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관광객 기만”이라고 본다.

#### 4. 수수료 등 부당이익

여행사 또는 그 종사자가 ‘불공정 경쟁 금지(反不正当竞争)’ 관련 규정에 위반하거나 편취유인·강박·유사강박행위(变相强迫) 등을 통하여 관광객이 소비하도록 하여 여행사업자가 수수료, 임금, 성과급 또는 장려금 등 각종 명의로 물품구매 또는 기타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이를 “수수료 등 부당이익”이라고 한다.

#### 5. 다른 관광객 일정구성에 영향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구체적인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선택관광 항목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관광객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을 배정해야 하지 않아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를 “다른 관광객 일정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각급 관광 담당기관은 여유법 관련 규정과 본 통지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더욱 힘쓰며, 여행자(관광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공평·질서·합법적 경쟁을 확보하며,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할 것을 당부함.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

2013년 12월 16일

## 제 5 장 비교 및 시사점

### 제 1 절 우리나라 관련 법제와의 비교

#### 1. 관련 법제의 연혁과 구조

한국 관광 관련 법제는 한국 최초의 관광법인 「관광사업진흥법」이 1961년 제정·공포되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sup>63)</sup> 이어 1962년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하였고, 그 근거법으로 「국제관광공사법」이 제정되어 외국관광객 유치를 전담하였다. 그리고, 「관광사업진흥법」은 4차례의 개정을 거쳐 1975년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관광사업 개발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sup>64)</sup> 동법은 다시 관광진흥법으로 통폐합되었다. 즉, 관광사업진흥법이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분리되고, 이처럼 분리된 관광사업법은 관광단지개발촉진법과 통폐합되어 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현재에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으로 단순화 되어 관광 관련 법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sup>65)</sup>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있다.

63) 원철식, 최영준, 정연구, 『관광법규와 사례분석』, 백산출판사, 2012, 11면.

64) 유문기, 홍창식, 김주승, 『최신관광법규해설』, 새로미, 2010, 38~39면.

65) 장평권, “한국관광 대도약을 위한 관광법제 정비방안”, 『관광학연구』 제55권 제4호(통권 90), 2011, 35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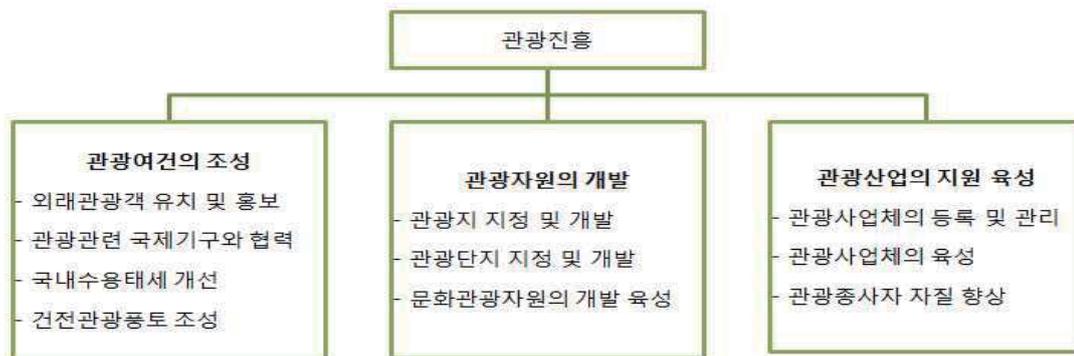
중국의 여유법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관광진흥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법제의 구성과 내용

관광진흥법은 총 7장, 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 총칙, 제 2장 관광사업, 제 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 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 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 6장 보칙, 제 7장 벌칙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의 구성을 제 1조 66)의 입법 목적면에서 파악하여, 관광여건의 조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산업의 지원 육성으로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67)</sup> 이러한 구성 체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가 가능하다.

[그림 3] 관광진흥법의 구성체계<sup>68)</sup>



66) 관광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7) 신용석·심원섭, 『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32면.

68) 신용석·심원섭, 앞의 책, 32면, “[그림 4-1] 「관광진흥법」의 구성체계” 인용.

관광진흥법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법령정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소개한 자료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규정의 내용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 3. 관광객 권익 보호에 관한 관련 법제

여행·관광과 관련하여 관광객 권익 보호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관광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과 더불어 관광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조정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검역법, 관세법 등이 있다.<sup>69)</sup>

그 중에서도 소비자로서의 관광객의 권익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으로는 관광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규제법, 여행업표준약관 등이 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광진흥법의 규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의 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69) 김성천,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 및 국내법제 동향’,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4. 25, 151면.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sup>70)</sup> 여행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품목은 2개 업종으로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이다.

[ 표 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0. 여행업(2개 업종)’의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sup>71)</sup>

국내여행 (1 - 3)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70) 김성천, 앞의 글, 151~152면.

71) 공정거래위원회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고시지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10>)

국내여행 (1 - 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li> </ul>	
<숙박여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li> </ul>	

국내여행 (3 - 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숙박여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li> </ul>	

제 5 장 비교 및 시사점

국내여행 (3 - 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li> <li>·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li>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li> <li>○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li> </ul>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li> </ul>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li> </ul>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li> </ul>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li> </ul>	

국 외 여 행(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 5 장 비 교 및 시 사 점

국 외 여 행(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li> <li>-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li> <li>·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li> </ul> </li> </ul> <p>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p> <p>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계약금 환급</li> <li>o 여행요금의 30% 배상</li> <li>o 여행요금의 50% 배상</li> <li>o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li> <li>o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li> <li>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li> </ul>	
국내여행 (2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li> </ul> <p>&lt;당일여행인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전액 환급</li> </ul>	

국내여행 (2-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li> </ul> <p>&lt;숙박여행인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금의 10% 배상</li> <li>○ 요금의 20% 배상</li> <li>○ 요금의 30% 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액 환불</li> <li>○ 요금의 10% 배상</li> <li>○ 요금의 20% 배상</li> <li>○ 요금의 30% 배상</li> </ul>	
<p>-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진)</p> <p>&lt;당일여행인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li> <li>·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불</li> <li>○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li> <li>○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li> </ul>	

국내여행 (2-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국 외 여 행(2-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o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o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2) 여행업표준약관

여행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행업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여행업표준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국내여행 표준약관(제10020호), 국외여행 표

준약관(제10021호)에 따라 각 여행업자는 계약서 및 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총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의 구성(제4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제6조), 여행업자의 책임(제8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의 계약해제(제9조), 계약체결의 거절(제10조), 여행요금(제11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과 요금 정산(제12조), 여행출발 전의 계약해제(제13조), 여행출발 후의 계약해지(제14조), 설명의무(제16조) 등이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총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의 구성(제4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제6조), 여행업자의 책임(제8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의 계약해제(제9조), 계약체결의 거절(제10조), 여행요금(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제13조), 손해배상(제14조), 여행출발 전의 계약해제(제15조), 여행출발 후의 계약해지(제16조), 설명의무(제18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4. 양국 법제의 비교

중국의 여유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10장 1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관광객에서는 관광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제3장 관광의 발전계획과 육성에서는 정부의 관광산업 지원 육성에 관한 내용이, 제4장 관광 사업에서는 여행사 및 관광산업 관련 단체의 진입규정과 행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8장과 제9장에서는 각각 관광 관련 분쟁의 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정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관광진흥법과 비교하여 본다면, 관광 계획 및 육성, 관광지 개발, 관광사업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관광업 발전육성에 관한 내용

내지 여행업자 등의 설립요건과 관광종사원의 자격,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하여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광진흥법이 제14조 [여행계약 등]에서만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계약 규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유법 제5장에서는 19개 조문을 할애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장 여행의 안전에서도 정부와 여행업자의 여행안전 의무와 관광객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진흥법이 아닌 약관이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관광분쟁의 처리에 대하여서도 중국의 여유법은 제8장 관광분쟁의 처리에서 현금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신고 접수기관 지정 또는 설립 의무와 함께 관광객의 여행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규정들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처럼, 관광객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중국의 여유법과 같이 관광법제에서 관광계획 및 육성과 관광 사업자에 대한 규범 외에도 관광 서비스 계약 규범에 대하여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소비자로서의 관광객에 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시사점

### 1.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

중국의 여유법 규정은 여행업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하여 진입 및 행위에 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국내적으로나 중국 관광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관광시장 입장에서는 여유법 시행 전보다 법률적인 제약이 많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여유법 시행초기에 중국 국내 여행업자나 관광업계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구조조정과 상품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72)</sup>

즉, 여유법 제35조의 여행사 업무 관련 금지사항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저가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여행사간 출혈이 큰 저가 상품이나 관광객의 권리 확보에 불리한 강제쇼핑, 옵션추가 등에 대하여 상당한 규제가 가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관광업계에서는 쇼핑 위주의 저가단체관광 상품 개발을 위주로 하던 형태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관광 상품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sup>73)</sup> 향후에도 중국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각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74)</sup>

관광객의 개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국민 전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관광산업은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서비스 산업이므로, 관광상품과 연계한 문화컨텐츠를 계속 발굴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즐겁

72) 张丙英, 앞의 논문, 243면; 叶海玲, “浅谈旅游法对旅游业的影响及旅游社的应对策略”, 《旅游管理研究》12月下半月刊, 2013, 14~15면.

73) 장정재·우석봉, 『중국인관광객 급증 요인과 대응과제』, 부산발전연구원, 2014.6.2., 10~12면.

74)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의 관광목적과 수요를 고려한 전문화된 상품의 개발, 한국의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융합된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는 관광코스 개발, 카지노 외에도 웰빙·힐링을 주제로 한류를 접목시킨 관광·오락상품,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 관광안내 인력 확보와 외국어 안내판 설치 확대, 관광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구비 등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의 상품화가 필요할 것이다.

고, 편안하며, 안전한 관광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차원의 의식 전환과 노력이 요구된다.

## 2. 단체관광의 품질 향상 필요성

중국 여유법 제35조의 여행사 업무 관련 금지 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자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3년 12월 16일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 4월 8일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여행자와 여행업자 간 서면계약 체결을 통하여 옵션관광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여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원래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조치들은 사전 계약에 의한 서면합의만 있으면 저가단체관광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여유법 시행으로 획기적인 관광상품의 품질 제고를 기대하였던 것과 달리 다시 저가단체관광 상품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관광객 내지 여행자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관광상품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쇼핑식 저가단체관광을 원하는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입국목적별, 규모별, 지역별로 상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품질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여유법 제정과 관련 법규 시행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별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제2011-0호, 문화체육관광부, 2011.10.19.)」 제9조 6항을 통하여 저가의 선택관광상품에 대한 일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2013년 9월부터는 2년마다 중국 단

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을 재심사 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각 지자체와 업계에서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 간에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즉, 국내의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국 여행사와 한국 현지여행사 간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 정부가 실질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유도 이처럼 양국의 관광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5)</sup>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관광산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양적·질적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여유법 제정이 관련 법제 완비를 통하여 관광업 육성과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 및 관광 소비 주체와 객체의 합리적인 권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한-중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구체화되어 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양국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3년부터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2013년 한국과 중국의 관광주관부처 장관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한-중 관광품질 향상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sup>76)</sup> 2014년 5월에는 한국 문화체육

75) 최경은, 앞의 글, 188면.

76) ‘한중 관광품질 향상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건설교통신문, 2013.10.25. 신

관광부와 중국 국가여유국이 ‘제1차 한중 관광 품질 향상 협력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의견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sup>77)</sup> 이처럼, 협의체 구성과 실무자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양국 관광산업에 관한 감독과 불편 사항 접수 등을 처리함으로써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 교류와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양국의 관광산업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존중하고, 관광자원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시에 교류해 갈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의사전달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토면적이 넓고 유통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한편, 전자상거래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sup>78)</sup> 향후에는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sup>79)</sup> 이에 대한 양국의 상호 감독·관리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 여행업자에 대한 정보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양국 정부는 기존의 평면적인 방식의 협력에서 나아가 정보공시, 업계 교류 지원, 온라인 관광 시장의 육성과 관리, 분쟁해결절차의 편리성과 공정성 확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탄력적 시장관리, 사업자의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참여 확대, 프로젝트별 관광상품 개발 등에 관한 한층 발전된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하여 관광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 개방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한-중 FTA를 통하여서도 관광업 분야의 발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문기사(<http://cntn.co.kr/4940>)

77) 정책브리핑, ‘한중 양국 정부와 관광업계, 관광품질 제고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2014.5.28.,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8285&call\\_from=extlink](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8285&call_from=extlink))

78) 宋瑞, 앞의 논문, 36면.

79) 张百菊·王兴华, 앞의 논문, 227면.

#### 4.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한국의 관광 관련 법제는 실제로 관광진흥법에 여행업 내지 관광업에 관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기본법의 기능 회복 필요성 내지 관광진흥법 자체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sup>80)</sup> 민법 개정 및 여행업법의 제정에 관한 움직임도 다소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sup>81)</sup> 향후 중국의 여유법 제정과 한-중 양국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의 관광 관련 법제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기본법에 대하여서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으므로 관광기본법과 관련 개별 법률들간의 유기적인 체계화를 통하여 법적지위와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82)</sup>

또한, 관광진흥법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제 법 적용상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sup>83)</sup> 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관광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정들에 대한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중국 여유법의 경우 관광객의 권익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관광객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관광자원의 보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여행사업자나 관광가이드에 대하여서도 의무 뿐만 아니

80) 신동일, 정지형, 위의 보고서, 5면.

81) 2004년 민법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여행업법안(의안번호 11426, 2011.4.5 발의, 임기만료폐기) 등(김성천, 앞의 글, 159~169면).

82) 장평권, 앞의 논문, 364면.

83) 윤성혜, 앞의 글, 51면.

라 권리 내용도 함께 규정하여 균형있는 관광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중국 여유법 제48조나 제52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온라인 여행사 운영 관련 규정이나 관광사업자의 관광객 개인정보 비밀준수 등에 관한 내용은 업계의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법제의 제·개정 시, 이러한 균형감 있는 관광 정책 수립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 방안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제 6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여행업 현황과 우리나라 관광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국 여행 관련 법제의 구성과 특징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여유법 제정이 우리나라 관광업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입국 외국인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중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주로 하는 여행사들의 수도 많다. 이에 국내에서는 중국의 여유법 시행 이전에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저가단체관광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 말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중국 국내법제가 한국의 관광시장과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여유법 시행 초기에는 저품질의 저가단체관광이 불가능해져서 국내 중국인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약간의 감소추세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하위규정을 통하여 사전 서면계약이 있으면 저가단체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바 있다. 이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여유법 제정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였던 것과 달리 규모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여유법 제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던 각계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즉, 관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과 여행사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여유법과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발전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체관광상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강국과 안전사회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관광산업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책적·입법적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국내 관광산업의 미래도 밝다고 본다. 또한,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큰 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상시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한-중FTA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간 협력을 기초로 업계간 교류도 강화해 가야 한다. 양국 업계 교류를 통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자율규제와 관광상품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상시적 정보교류와 함께 분쟁해결체계를 구축해간다면 앞으로 한-중 간의 관광서비스산업 간의 실질적인 상호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국내 자료

- 신동일·정지형, ‘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 No.167, 제주발전연구원, 2013. 9. 30
- 인천발전연구원 한중Zine 최신중국동향 vol.125, 2014.
- 장정재·우석봉, 『중국인관광객 급증 요인과 대응과제』, 부산발전연구원, 2014.6.2.
- 최경은, ‘중국 여유법 주요 이슈 분석 및 방한관광에 미치는 영향 전망’, 『KCTI Insight 제22호(2013-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9. 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 여유법 제정에 따른 중국인 방한 관광에 미치는 영향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도자료』, 2013. 9. 30
- 원철식, 최영준, 정연구, 『관광법규와 사례분석』, 백산출판사, 2012
- 장평권, “한국관광 대도약을 위한 관광법제 정비방안”, 『관광학연구』 제55권 제4호(통권 90), 2011
- 유문기, 홍창식, 김주승, 『최신관광법규해설』, 새로미, 2010
- 신용석·심원섭, 『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국외 자료

- 张丙英, “《旅游法》对旅行社与游客的影响分析”, 《科技信息》 2014年第04期. 2014.

참 고 문 헌

- 张圆媛, “浅析新《旅游法》出台后对旅行社经营的影响”, 『旅游管理研究』 2014年2月下半月刊, 2014.
- 李倩倩, “解读《旅游法》对旅行社‘零负团费’的制约”, 『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 第33卷 第12期, 2013.
- 韩玉灵·武冰欣, “促进旅游业健康发展的重要保障—写在『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出台之际”, 『理论研究』, 2013.
- 叶海玲, “浅谈旅游法对旅游业的影响及旅游社的应对策略”, 《旅游管理研究》 12月下半月刊, 2013.
- 孔令学, “浅谈《旅游法》对旅游者安全的全方位保护机制”, 『旅游学刊』 第28卷 2013年 第8期, 2013.
- 米一, “旅游法:剑指行业痼疾”, 『法治与社会』 2013年 10期, 2013.
- 张百菊·王兴华, “浅谈旅游法实施对旅游业界的影响”, 『才智』 2013年 第34期, 2013.
- 宋瑞, ‘产业发展视角下的《旅游法》’, 『价格理论与实践』, 第8期 总第350期, 中国价格协会, 2013.
- 韩玉灵, 『旅游法教程』, 北京:旅游教育出版社, 2007.
- 乔力·李茂民·高连营. ‘大旅游概念与21世纪旅游业的发展’, 『山东社会科学』, 山东省社会科学界联合会, 2000.
- 王立纲·卢印东, 『旅游法律知识问答』, 北京:旅游教育出版社, 1998.
- 魏小安, 『新编旅游经济学』,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98.

## 관련 중국 웹사이트

<http://www.gov.cn>

<http://www.cnta.gov.cn>

<http://www.hainanpc.ne>

<http://www.law-lib.com>